

## 朝鮮 通信使를 포함한 韓·日 관계에서의 飲食文化 교류\*

### 1. 朝鮮前期 韓·日 관계에서의 교역물품과 日本使臣 접대

김상보\*\* · 장철수\*\*\*

대전보건대학 전통조리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년 9월 28일 접수)

## Food culture Interchange i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cluding the Cho Sun Communication Facilities\*

### 1. The trade goods and receptions for Japanese envo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t the first term of the Cho Sun era

Sang-bo Kim\*\* and Chul-soo Chang\*\*\*

Taejon Health Sciences Colleg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ceived September 28, 1998)

## Abstract

Food goods traded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first term of the Cho Sun era included Omija (fruit of the *Maximowiczia chinensis*), Jat (pine nuts), Insam (Jinseng), rice, and beans as exports ; and pepper, sugar, and medicinal stuffs as imports.

The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was a result of Japanese envoies' visiting. The official number of Japanese envoies who had exchanges with Koreans were two thousand people a year.

Once the Japanese entered Korea, they did not need to pay for their living expenses for the length of their visit because the Cho Sun government bore the whole expense. The Cho Sun government gave formal receptions to them, which included daily meals as well as banquet style meals.

The daily meals included Jo-ban (breakfast), Jo-seok-ban (breakfast and dinner), and Ju-jeom-sim (lunch). Meals were served four times a day. The banquet style meals included Sam-po-yeon (a banquet that was held in Sam-po), Kyong-joong-young-jeon-yeon (a farewell banquet, and a welcome banquet that was held in Seoul), Jyu-bong-bae (to offer a guest a drink by day), No-yeon (a banquet that was held on the street), Kwol-nae-yeon (a banquet that was held within the Royal Court). It also included Ye-jo-yeon (a banquet that was held in Ye-jo), and Myong-il-yeon (a banquet that was held on a national holiday). The banquet style meals were composed of Ceon-tack (to set a table for dinner), Sang-hwa (a flower that was put on the food), Kwan-hwa (to offer a flower when a banquet was held), Ju-5-jan (the fifth wine glass), Dae-seon (meat), and music.

## I. 서론

금구(禁寇)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선 전기의 교린외교는 통상외교로 발전하였으며, 다량의 물품이 유입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였다. 일본 사신의 내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통상외교는 양국의 무역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의 일본인의 내왕에 의하여 문화적 교류도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究明의 일환으로 통상외교를 통하여 파생된 교역물품과,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 문화를 밝힘으로서, 조선조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전기의 한일관계에서의 음식문화 교류의 한 면을 究明하고자 한다.

## II. 조선 전기의 한·일 관계

### 1. 왜구의 침입과 한·일 관계

14세기 초 일본에서는 무인정권(武人政權)인 카마쿠라막부(鎌倉幕府)가 멸망하고 이어 남북조의 내란이 야기되어 국내의 통제력이 마비되었다. 14세기말에는 무로마찌막부(室町幕府)가 성립되었지만 역시 강력한 정치력을 구축하지 못한 채 15세기 중엽에는 응인(應仁)의 난이라 불리는 정란이 일어나는 혼란 속에 빠졌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내 각지에서는 다이묘[大名:계후]들이 자립하여 전국을 분국화 하였다. 이 시대가 전국시대이다. 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국내를 통일한 자가 16세기말의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이다.

14세기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산업과 상업이 발달하였으며, 상업 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연해민의 활동도 자유로와 해의 물자 획득욕이 왕성해지면서 출현한 것이 왜구이다. 고려 말 공민왕·우왕 양대 37년간 452회의 왜구의 침입은 통제 불가능하였던 고려말의 시대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공민왕 때부터 심해져서 이 때에 74회, 다음의 우왕 때에 378회에 이르게 되고, 고려말의 통제 불가능하였던 시대적 상황은 결국 조선왕조의 커다란 과제로 넘겨졌다(李鉉淙, 12-13).

고려에 이어 창건된 조선왕조는 그 초기부터 중국의 명(明)나라에 대해서는 사대(事大)를, 이웃인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交隣)을 외교의 2대 지주로 삼았다. 일본에 대한 교린 외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금구(禁寇)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회유 정책이다. 금구교섭을 위하여 평화적인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고(『태조실록』 卷6 태조3년 10월 丁丑條), 변방을 엄중히 하여 그들의 발호를 무력으로서 제재하기도 하였으며(『세종실록』 卷5 세종원년 9월 壬戌條), 회유하기 위하여 옷·양식·물자들을 후사하기도 하였고(『태조실록』 卷28 태종14년 7월 壬午條), 귀순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태조실록』 卷10 태조5년 12월 乙巳條), (『부산시사』).

### 2. 삼포(三浦)와 계해약조(癸亥約條)

조선초의 금구(禁寇)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회유 정책에 따라 일본과의 통교는 점차 활발해졌다. 일본으로부터 막부(幕府)의 사행(國王使), 영주(領主)의 사행(諸酋使), 대마도의 사객(使客)·도민(島民)·왜상(倭商)등의, 주로 장사를 목적으로 한 내왕이 빈번하여

짐에 따라 생겨난 군사적·경제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포(浦)를 한정하여 태종7년(1407) 부산포(釜山浦)와 내이포(乃而浦 熊川)가 최초로 개항하게 되었다(『태종실록』 卷14 태종7년 7월 戊寅條).

부산포와 내이포의 개항에 이어 태종18년(1418)에는 새로이 염포(鹽浦)와 가배량(加背梁)의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4개처가 개항되어 왜인에 대한 개방책과 후대책을 거듭하게 된다(『태종실록』 卷35 태종18년 3월 壬子條). 그러나 왜구의 활동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 원년(1419)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었고(『세종실록』 卷5 세종원년 9월 壬戌條), 이를 계기로 4개의 포(浦)는 폐쇄되었다. 이 폐쇄 기간 동안에도 일본의 여러 섬들로부터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오고 가는 통에 역참들이 건디어 내지 못하게 되어 그들이 왕래하는 길을 두 갈래로 갈라놓기도 하였다.

대마도 정벌 이후 세종 4년(1422) 9월 대마도주 종정성(宗貞盛)이 귀순 해 음으로서 완화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세종5년(1423) 4월에는 부산포와 내이포를 다시 개항하였고(『세종실록』 卷17 세종4년 9월 丙寅條), 세종 5년 10월에는 부산포와 내이포에 왜객의 지공(持供)을 위한 시설까지 준비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세종실록』 卷20 세종5년 4월 丙寅條).

세종8년(1426), 대마도로부터 거제도의 전지 개간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 따라 거제도 개간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그 대신 염포를 열어 무역하게 함으로서, 왜인은 도박적인 내이포·부산포·염포의 삼포를 통하여 무역하게 하였다(『세종실록』 卷22 세종5년 10월 壬申條).

왜인들이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물자 공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세종25년(1443)에는 신속주(申叔舟)의 참여하에 대마도주와 계해약조(癸亥約條)를 맺게 된다(『증정교린지』 卷4, 「約條」). 계해약조를 통하여 세건선(歲遣船, 무역선)의 수를 50척으로 제한하고, 매년 조정에서 도주(島主, 대마도 도주)에게 사급하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200석으로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약간의 특송선(特送船)을 보낼 수 있음과, 조정은 도주에게 도서(圖書: 입국사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마도와 일본 각 처의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이 계해약조를 바탕으로 한 대일무역은, 중종5년(1510) 삼포의 왜란으로 삼포가 폐쇄될 때 까지 삼포는 대일 통교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 3. 왜인 접대비용

세조 원년(1455)의 한해 동안 일본 각처로부터 온

왜인이 6000여명이었다는 사실은(『세조실록』 卷2 세조 원년 12월 乙酉條), 그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접대비용도 막대하였음을 의미한다. 도래하는 왜사에 대해서는 그 계층에 따라 접위(接慰)도 각각 달랐는데, 그들의 직책에 따라 음식의 내용과 접대에우 및 연향담당자가 각각 달랐다. 그들이 조선의 삼포에 도착하였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포소로부터 항해기간 중의 식량까지도 급여 받았다. 그들이 입국하여 본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은 전적으로 조선의 부담이었다(『해동제국기』).

세종 21년(1439)의 도래 총선수를 204선에서 218선으로 보았을 때, 도래한 왜인의 숫자는 5500 - 6000명이라는 것과(李鉉滄, 79-82), 앞서 기록한 세조원년의 6000명이라는 기록은, 대략 조선 전기의 한 해 동안 출입하는 왜인의 평균 숫자가 6000명 정도로 확인되는 것으로, 사행의 경우는 1년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약 1500-2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세종 6년(1424)의 국왕사행을 예로 들어보면 한번에 송선 16척에 523명이라는 인원수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달 양식으로 쌀 209섬 3말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선 반달분 양식인 104섬 9말을 보낼 것을 예조에서 제의하고 있다(『세종실록』 卷23 세종6년 2월 己酉條).

조선 전기의 이렇듯 빈번한 왜인의 출입은 엄청난 비용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었다. 왜구에 대한 방어 목적에서 기인한 회유책으로 탄생한 삼포의 개항에 따른 교역은, 조선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적극적인 왜인의 출입에 수반하여 접대비용도 엄청나 국고에 소장된 료미(料米)가 고갈이 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세종실록』 卷81 세종21년 10월 丙申條), (『성종실록』 卷51 성종 6년 정월 丙寅條).

### III. 韓·日관계에서의 교역 물자

조선 전기의 한·일 관계에서의 교역 물자를 1392(태조)년부터 1450(세종)년까지로 국한하여 규명한다. 이미 전기한 바와 같이 대일 교역은 일본의 막부(幕府)가 약체였기 때문에, 막부를 위시하여 일본의 여러 호족과도 교역하는 다원적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다원적 교역의 형태란, 일본의 여러 호족이 조선의 국왕에게 물품을 헌상하면 조선측이 답례로 회사(回賜)품을 보낸 소위 진상(進上)이라는 형태의 교역이다.

#### 1.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교역물자

##### 1) 약재류

두충 · 마황(麻黃)<sup>1)</sup> · 계심(桂心)<sup>2)</sup> · 천궁(川芎)<sup>3)</sup> ·

소목(蘇木)<sup>4)</sup> · 육두구(肉荳蔻)<sup>5)</sup> · 빈랑(檳榔)<sup>6)</sup> · 소합향(蘇合香)<sup>7)</sup> · 감초 · 파두(巴豆)<sup>8)</sup> · 황기(黃芪)<sup>9)</sup> · 택사(澤瀉)<sup>10)</sup> · 당귀 · 진피(陳皮)<sup>11)</sup> · 상산(常山)<sup>12)</sup> · 봉출(蓬朮)<sup>13)</sup> · 황금(黃芩)<sup>14)</sup> · 초과(草果)<sup>15)</sup> · 용뇌(龍腦)<sup>16)</sup> · 부자(附子)<sup>17)</sup> · 창이자(蒼耳子)<sup>18)</sup> · 량강(良薑)<sup>19)</sup> · 아선약(阿仙藥)<sup>20)</sup> · 축사밀(縮砂密)<sup>21)</sup> · 패모(貝

- 1) 마황(麻黃) : 마황과에 속하는 상록관목, 중국 북부 · 몽고의 원산으로 사막에 분포함. 알카로이드를 함유한 줄기를 마황이라하며 해열 · 오한 · 해수 · 백일해 등의 약재로 쓰임.
- 2) 계심(桂心) : 계피의 겉껍질 속의 얇고 노란 부분. 약재로 쓰임.
- 3) 천궁(川芎) : 궁궁이의 뿌리.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쓰임.
- 4) 소목(蘇木) : 약재로 쓰는 다목의 붉은 속살, 破血하는 효험이 있음.
- 5) 육두구(肉荳蔻) : 몰러카즈제도의 원산으로 배유 및 붉은 주황빛 假種皮는 약용 또는 조미료로서 용도가 넓음.
- 6) 빈랑(檳榔) : 빈랑나무의 열매, 인도 · 동남아시아의 열대 지방에 분포함. 식용 또는 심복통, 각기 · 구충제 등의 약재로 쓰임.
- 7) 소합향(蘇合香) : 蘇合油. 소아시아에 분포. 약용 · 향료로 쓰임.
- 8) 파두(巴豆) : 열대아시아 원산. 종자 기름으로 하제 · 피부 자극제로 씀.
- 9) 황기(黃芪) : 콩과에 속하는 다년초, 뿌리는 약용으로 防汗의 약재로 씀.
- 10) 택사(澤瀉) : 택사과에 속하는 다년초. 택사의 괴근은 임질 · 습진 · 부종 · 利水道 등의 약재로 씀.
- 11) 진피(陳皮) : 오래 묵은 귤껍질. 맛은 쓰고 매운데 건위 · 발한의 약효가 있음.
- 12) 상산(常山) : 운향과에 속하는 낙엽활목. 뿌리는 약용. 학질 · 痰의 약으로 쓰임.
- 13) 봉출(蓬朮) : 붕이슬의 말린 근경.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초. 히말라야가 원산인데 열대지방에서 많이 재배함. 방항성 전위제로 씀.
- 14) 황금(黃芩) :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초. 동남아시아 원산. 뿌리는 오줌소태 · 배앓이 · 골증 · 하혈 · 動胎 · 기침 · 喉症 등에 씀.
- 15) 초과(草果) : 초두구의 한 종류. 중국의 운남 · 양광 등지에 분포함. 열매는 위한(胃寒) · 심복통 · 토사 · 霍亂 · 反胃 등의 약재로 씀.
- 16) 용뇌(龍腦) : 龍腦樹로부터 채취한 방향이 있는 무색투명의 판상결정. 용뇌수는 보르네오 · 수마트라가 원산. 구강제 · 방충제로 쓰임.
- 17) 부자(附子) : 바닷의 구근. 체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모든 병에 유효함.
- 18) 창이자(蒼耳子) : 도꼬마리의 열매. 피부병 · 치통 · 鼻淵 등에 쓰임.
- 19) 량강(良薑) : 高良薑.
- 20) 아선약(阿仙藥) : 인도에서 나는 catechu나무의 속이나

母)<sup>22</sup> · 육종용(肉蓯蓉)<sup>23</sup> · 대모분(玳瑁粉)<sup>24</sup> · 백단(白檀)<sup>25</sup> · 침향(沈香)<sup>26</sup> · 광향(藿香)<sup>27</sup> · 연교(連翹)<sup>28</sup> · 서각회두축사(犀角灰豆縮砂)<sup>29</sup> · 육계(肉桂)<sup>30</sup> · 심황(深黃)<sup>31</sup> 등.

2) 식품류

후추 · 정향(丁香)<sup>32</sup> · 사탕 · 말린오매 · 온주굴 · 굴나무 · 흑시(黑柿)<sup>33</sup> · 갈근가루 · 소면(素麵) · 국수 등.

3) 물감 · 매염 및 옷감류

다목(丹木)<sup>34</sup> · 백반 · 황단(黃丹) · 주홍(朱紅) · 기린혈(麒麟血)<sup>35</sup> · 소방(蘇方)<sup>36</sup> · 금란(金欄)<sup>37</sup> · 당사(唐絲)<sup>38</sup> · 생초(生絹)<sup>39</sup> · 광견(廣絹)<sup>40</sup> · 비단 · 금란비단 등.

4) 기용(器用)류

자개상자 · 손괘짜 · 음식장 · 상아악그릇 · 사기술그릇 · 흰사기접시 · 흰사기사발 · 찻잔 · 쟁반 · 구리옹술 · 검은칠상자 · 붉은사발 · 푸른사기쟁반 · 푸른사기통 · 붉은칠한쟁반大小 · 흰사기찻그릇 · 푸른사기찻그릇 · 푸른사기쟁반 · 술단지 · 유리술잔 · 금도금주전자 · 다홍동이大小 · 다홍나무통 · 옹술 · 다홍차완大小 등.

5) 기타

흑단(黑檀)<sup>41</sup> · 비파나무화분 · 비파나무잎 · 자단(紫檀)<sup>42</sup> · 죽사(竹絲)<sup>43</sup> · 등나무 · 은부채 · 접이부채 · 부채 · 물소뿔 · 유향 · 구리 · 칼 · 환도 · 큰칼 · 차고 다니는 칼 · 붉은 긴 창 · 적동 · 백동 · 상아 · 장뇌(樟腦)<sup>44</sup> · 향 · 가는등(橙) · 당주지(唐周紙)<sup>45</sup> · 밀토 · 황랍 · 빗 · 연 · 납 · 단사(丹砂)<sup>46</sup> · 은 · 광명주(光明珠)<sup>47</sup> · 보사(寶砂)<sup>48</sup> · 벼루 · 철 · 향백지 · 사슴가죽 · 가죽상자 · 청귤피[青橘皮] · 연위(研緯) 등.

2.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교역물자

1) 식품류

갓 · 인삼 · 오미자 · 청밀 · 박계 · 다식 · 꽃감 · 차 · 소주 · 쌀 · 현미 · 콩 · 잉어 · 고니

2) 옷감류

베 · 흑세포(黑細布) · 적세포(赤細布) · 흑마포(黑麻布) · 흰모시(白苧布) · 흰색가느모시 · 무명(木棉) · 명주 · 흰명주(白綿綢) · 가사<sup>49</sup> · 쾌자<sup>50</sup> · 장삼<sup>51</sup> · 비단 · 갓끈 · 옥을 박은 갓끈 · 적상모(赤象毛)<sup>52</sup> · 옥정자(玉

uncaria나무의 잎에 물을 붓고 불에 조리어 만든 약. 지혈 · 수렴제 또는 검정 물감 · 무두질에 쓰임.

- 21) 축사밀(縮砂密) : 축사라고도 함. 생강과에 속하는 풀. 중국 남부에 분포함. 씨는 축사 또는 사인(砂仁)이라 하여 한방 약재로 쓰임.
- 22) 패모(貝母) :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초. 중국 원산. 기침과 담의 약재로 씀.
- 23) 육종용(肉蓯蓉) : 열당과에 속하는 기생식물의 한가지. 폐병의 특효약이라 함.
- 24) 대모분(玳瑁粉) : 대모란 열대와 아열대에 분포하는 바다 거북의 하나. 여기서는 바다거북의 등껍데기를 말함. 대모분은 껍질가루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약재로 생각됨. 원래 대모는 공예품과 장식품에 귀중하게 쓰였음.
- 25) 백단(白檀) : 말레이 · 인도에 분포함. 재목은 향료 · 불상 조각 · 세공물에 쓰임. 백단유는 향료 또는 입질 · 방광카타르 등의 치료에 쓰임.
- 26) 침향(沈香) : 팔꽃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 인도 · 동남아시아 원산. 침향의 속 고갱이는 광란 · 심복통 등의 약재로 쓰이고, 수지를 침향이라하여 예로부터 향료로 극히 진중 됨.
- 27) 광향(藿香) : 순형과에 속하는 약초. 위장약 · 광란과 소화기를 범한 외감에 쓰임.
- 28) 연교(連翹) : 개나리의 열매. 이뇨 · 살충 · 止痛 · 消腫 · 排膿 하는데에 내복약으로 쓰임.
- 29) 서각회두축사(犀角灰豆縮砂) : 무소의 뿔 끝 부분을 분말로 만든 것. 해열제로 쓰임.
- 30) 육계(肉桂) :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 강장제로 씀.
- 31) 심황(深黃) :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초. 일명 울금이라고도 함. 열대 지방에서 재배. 근경은 지혈제 · 건위제로 쓰고, 건조한 분말은 황색 물감으로 씀.)
- 32) 정향(丁香) : 동남아시아 원산. 정향유는 방향이 좋아 향미료등에 쓰임.
- 33) 흑시(黑柿) : 먹감.
- 34) 다목(丹木) : 동인도가 원산. 콩과에 속하는 상록교목. 속의 붉은 부분은 깎아서 蘇方이라고 하여 황색 물감으로 쓰며, 蘇木이라 하여 한방 약재로도 씀. 뿌리는 黃丹이라 하여 황색물감으로 사용함.
- 35) 기린혈(麒麟血) : 용혈수(龍血樹)의 열매에서 짜 낸 붉은 빛깔의 수지. 착색제 · 방식제(防蝕劑)로 쓰임.
- 36) 소방(蘇方) : 丹木의 목재 속에 있는 붉은 살. 깎아서 달인 물을 물감으로 쓰는데 빛이 새빨강고 고우나 퇴색함.
- 37) 금란(金欄) : 금박을 종이에 붙여서 가늘게 자른 平金絲. 紗 등의 비단 바탕에 호화찬란한 금실로 무늬를 짜낸 직물 織金.
- 38) 당사(唐絲) : 중국에서 나는 명주실.
- 39) 생초(生絹) : 생사(生絲)로 얇게 짠 집의 한 가지.
- 40) 광견(廣絹) : 명주실로 얇고 성기게 짠 김.
- 41) 흑단(黑檀) : 감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교목. 인도 · 말레이 반도 원산. 고급가구 · 기구 · 악기 · 지팡이 등의 재료에 쓰임.
- 42) 자단(紫檀) : 콩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교목. 인도 및 스리랑카가 원산. 樺榴라 하여 건축 및 가구 도구의 재료로

頂子)<sup>53)</sup>

### 3) 기타

표범가죽·범가죽·갓가지 빛깔의 서피(鼠皮)·각종 채색 꽃자리·꽃무늬를 가득 놓은 자리·채색 꽃방석·신<sup>54)</sup>·금자로 쓴 인왕호국반야파라밀경·금자로 쓴 아미타경·금자로 쓴 석가보·푸른 종이에 금자로 쓴 단권의 화엄경·대장경·화엄경목판·불경목판·종(『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조 초 일본과의 교역물품은, 일본에서 조선에 온 물자는 약재·식품·물감·은·유황 등의 상당히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고 조선에서 일본에 간 것으로는 갓·인삼·오미자·쌀·콩·배·무명·화엄경 등 제한된 품목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조선전기의 한·일간의 교역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물품은 회사품(回賜品)이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물품은 진상품(進上品)이었다.

일본과의 교역은 일본의 여러 호족과 교역하는 다원적 교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교역 물품은 자기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마도의 경우에는 백반·다목·후추 등으로 쌀·배와 교역하고 있고(1419년)(『세종실록』 卷3 세종 원년 2월 甲辰條), 일기도의 경우는 백반·다목·후추·정향·고량강(高良薑) 등으로 쌀·배와 교역하였으며(1418년)(『세종실록』 卷1 태종 18년 9월 乙丑條), 구주(九州)는 다목·백반·유황·육계·후추·침향·심황·백랍 등으로 배·무명과 교역하고 있다(1418년)(『세종실록』 卷2 태종 18년 12월 甲午條).

조선조 초기에 이루어진 후추의 유입은 일본으로부터의 유입과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즉 두 갈래의 유입이 있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은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입경 할 때에 갖고 오는 것으로 세종2년(1420) 중국사신인 한확은 후추 5말을 임금께 바쳤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다(『세종실록』 卷8 세종2년 5월 乙酉條). 일본의 후추이든 중국의 후추이든 양자 모두는 자바·스마트라·말레이반도에서의 교역물품으로, 중국에서는 송대(宋代) 특히 13세기 초부터 자바의 후추 수입이 성행하였다. 중국의 그 당시 후추의 용도는 진통·해열의 약용으로서(金a, 338-389), 조선조 초기에도 약용으로서 후추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추는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입경 하였을 때에 조선과 명과의 교역 물품이 되기도 하였다. 세종 5년(1423) 예조에서는 “사신이 들어있는 객관에서 교역할 때에 비단·금·은·다목·백반·후추·표범가죽·잘가죽·열두새모시·베를 제외하고는 전례에 따라 팔고

사게 할 것입니다”하고 제외하고 있다. 즉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들 품목들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던가 공식적인 매매가 있었음을 의미한다.(『세종실록』 卷19 세종 5년 3월 壬寅條).

후추는 사(私)무역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세종 6년(1424)의 기록에 의하면 호조에서는 “일본인들이 사적으로 가지고 온 물건은 이미 저자 사람들더러 사라고 하였으나 저자 사람들은 밀천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몽땅 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구리·납·다목·후추·큰칼과 같은 물건은 공조·군기감·의영고 등 각 관청에서 사게 하기 바랍니다.” 하고 제외하고 있다.(『세종실록』 卷23 세종 6년 정월 辛丑條).

뉴기니아 원산인 사탕수수(BC 2000년 경 인도로 전해져, 인도가 제2차 원산지가 되어 세계 각 지역에 퍼짐으로 해서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추정되고 있다. 한반도에도 설탕의 전래는 중국을 경유하여 들어왔고 그 시기는 삼국시대 때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일본의 경우 나라(奈良)시대의 청장원 보물 약재 속에 설탕(蔗糖)이 분명히 있고, 1091년에는 사탕(砂糖)을 선물 받았는데, 이 사탕에 대한 설명에서 당과물(唐藥物)로 기록하고 있다. 사탕은 그 후 중국과의 무역에 의하여 꾸준히 과자로서 일본에 오게 된다(鈴木, 1282). 이 사탕이 조선조 초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교역물품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세종실록』 卷14

쓰임.

- 43) 죽사(竹絲) : 실처럼 가늘게 오린 대오리. 갓이나 짚이 좋은 패랭이·삿자리를 만드는데 쓰임.
- 44) 장뇌(樟腦) : 眞樟·油樟·芳樟 등 樟木의 등치·뿌리·가지를 증류하여 만든 반투명의 결정. 감심제 등의 제조 및 방충제·방취제 등의 제조에 쓰임.
- 45) 당주지(唐周紙) : 당 두루마리.
- 46) 단사(丹砂) : 朱砂.
- 47) 광명주(光明珠) : 빛나는 구슬.
- 48) 보사(寶砂) : 金剛砂의 가루. 석류석을 가루로 만든 물건. 수정이나 대리석을 딱는데 쓰이거나 성냥갑에 칠하기도 함.
- 49) 가사 : 붉은 빛깔의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만들고, 초록빛깔의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장식한 중의 장삼위에 걸쳐 입는 법복.
- 50) 쾌자(快子) : 자주 빛깔의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만들고, 검푸른 빛깔의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장식한 옛 戰服의 하나.
- 51) 장삼 : 보라 빛의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만든 중의 옷.
- 52) 상모(象毛) : 기(旗)나 창 등의 머리에 이삭 모양으로 만들어 다는 붉은 빛깔의 가는 털.
- 53) 옥정자(玉頂子) : 갓 꼭대기에 眞玉으로 만들어 단 장식.
- 54) 신 : 자주 빛깔의 서피로 만든 중의 신.

세종3년 11월 乙丑條), 『세종실록』 卷20 세종 5년 6월 庚午條).

한편 세종 5년(1423)정월 초하루 구주(九州)에서 사신을 보내 태종 대왕의 제사에 쓰도록 제사에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록에는 소면(素麵) 30근·취뿌리가루 15근·침향 2근·온주굴 1000개·초50개가 들어 있었다(『세종실록』 卷19 세종 5년 정월 癸未條). 일본의 토산물로서의 굴과 국수가 교역물품의 하나가 된 예이지만, 굴에 대한 것은 이밖에도 세종6년(1424)에 대마도주가 사람을 보내어 굴나무 50그루를 바쳤다는 기록도 있다(『세종실록』 卷25 세종 6년 7월 乙亥條).

조선조 초기 일본과의 교역물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약재류이다. 그 당시 일본이 남만(南蠻)이라 칭했던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동남아시아 원산의 여러 약재들을, 조선은 일본을 통해서 구하였던 것이다. 대마도·구주(九州)·일기도 등은 남만과의 약재 교역의 중개상의 역할을 한 셈이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식품 중 인삼·오미자·잣은 그 당시 조선의 토산물로서 대표적인 식품이었다. 인삼·오미자·잣은 1420년 조선사신을 일본에 보낼 때의 답례 품목이었을 뿐만 아니라(『세종실록』 卷7 세종 2년 정월 甲申條), 1423년에는 명나라의 황제에게 보내기도 하고 명사신에게 사적으로 선물하는 품목이기도 하였다.(『세종실록』 卷20 세종5년 6월 壬子條).

#### IV. 『海東諸國記』에 나타난 일본 사신의 규모와 사신 접대

##### 1. 일본 사신의 규모

조선 전기의 일본의 국토는 8도의 66주 및 일기도·대마도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기내(畿內)의 5주: 산성주(山城州, 京都), 대화주(大和州, 奈良), 화천주(和泉州, 大阪), 하내주(河內州, 大阪), 섭진주(攝津州, 兵庫縣)

동산도(東山道)의 8주: 근강주(近江州, 滋賀縣), 미농주(美濃州, 岐阜縣), 비탄주(飛彈州, 岐阜縣), 신농주(信濃州, 長野縣), 상야주(上野州, 群馬縣), 하야주(下野州, 栃木縣), 출우주(出羽州, 栃木縣), 육오주(陸奥州, 靑森縣)

동해도(東海道)의 15주: 이하주(伊賀州, 三重縣), 이세주(伊勢州, 三重縣), 지마주(志摩州, 三重縣), 미장주(尾張州, 愛知縣), 삼하주(參河州, 愛知縣), 원강주(遠江州, 精江縣), 이두주(伊豆州, 靜江縣), 준하주(駿河州, 精江縣), 갑비주(甲斐州, 山梨縣), 상모주(相模州, 神奈

川縣), 상총주(上總州, 千葉縣), 하총주(下總州, 茨城縣), 상륙주(常陸州, 茨城縣), 무장주(武藏州, 東京), 안방주(安房州, 千葉縣)

산양도(山陽道)의 8주: 번마주(幡摩州, 兵庫縣), 미작주(美作州, 岡山縣), 비전주(備前州, 岡山縣), 비중주(備中州, 岡山縣), 비후주(備後州, 廣島縣), 안예주(安藝州, 廣島縣), 주방주(周防州, 山口縣), 장문주(長門州, 山口縣)

남해도(南海道)의 6주: 기이주(紀伊州, 和歌山縣), 담로주(淡路州, 和歌山縣), 아과주(阿波州, 德島縣), 이예주(伊豫州, 愛媛縣), 찬기주(讚岐州, 香川縣), 토좌주(土佐州, 高知縣)

북륙도(北陸道)의 7주: 약적주(若狹州, 福井縣), 월진주(越前州, 福井縣), 월중주(越中州, 富山縣), 월후주(越後州, 新潟縣), 능등주(能登州, 石川縣), 좌도주(佐渡州, 新潟縣), 가하주(加賀州, 石川縣)

산음도(山陰道)의 8주: 단과주(丹波州, 兵庫縣), 단후주(丹後州, 京都), 단마주(但馬州, 兵庫縣), 인번주(因幡州, 鳥取縣), 백기주(伯耆州, 鳥取縣), 출운주(出雲州, 島根縣), 석견주(石見州, 島根縣), 은기주(隱岐州, 島根縣)

서해도(西海道)의 9주: 축전주(筑前州, 福岡縣), 축후주(筑後州, 福岡縣), 풍전주(豊前州, 福岡縣), 풍후주(豊後州, 大分縣), 비전주(肥前州, 長崎縣·佐賀縣), 비후주(肥後州, 熊本縣), 일향주(日向州, 宮崎縣), 대우주(大隅州, 鹿兒島縣), 살마주(薩摩州, 鹿兒島縣)

대마도(對馬島): 8군(郡) 82포(浦)

일기도(壹岐島): 7향(鄉) 13리(里) 14포(浦)

이상의 일본의 여러 주중에서 조선조 전기 사신을 보내어 내조한 주는 산성주·섭진주·신농주·번마주·비전주·비후주·안예주·주방주·장문주·아과주·약적주·단후주·단마주·출운주·석견주·은기주·축전주·풍전주·풍후주·살마주·대마도·일기도 등이다(『해동제국기』).

이들 사신들은 크게 4부류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막부(幕府, 國王)<sup>55)</sup>의 사신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큰 제후의 사신(巨酋)<sup>56)</sup>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구주절도사

55) 막부(幕府)의 장군을 지칭한 것. 미나모토노요리토모(源賴朝)의 카마쿠라막부 창설 이후에는 모든 국정(國政)은 막부의 장군이 치결하였으므로, 사실상 국왕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무로마찌(室町)막부의 장군 아시카가(足利義滿)가 명(明) 나라와 통호(通好)할 때, 명의 국서에서 “爾日本國王源道義”라 지칭하였음에 대하여 아시카가 자신도 이를 시인하고, 답서에 “일본국왕 신 원(日本國王臣源)”이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국왕」이라 했으니, 곧 명나라의 것을 따른 것이다. 국왕 전(殿)은 천황궁

(九州節度使)<sup>57</sup> 및 대마도주(對馬島主)의 특송사(特送使)<sup>58</sup>이고, 맨 마지막으로는 각 주 제후의 사신과 대마도 사람으로서 관직을 받은 사람이다.

해 마다 조선에 들어오는 사신의 숫자는 대마도가 배 50척이고, 배 50척 이외에 특별히 배를 보내오는 것을 말하는 특송사(特送使)는 일정한 정해진 숫자가 없었으며, 각 주의 제후는 배 1-2척, 관직을 받은 사람은 1차의 내조(來朝), 막부의 사신은 배 3척, 큰 제후의 사신은 배 2척으로 한정하였다(계해약조). 배는 3등급이 있었는데 소선은 25尺 이하, 중선은 26-27尺, 대선은 28-30尺으로서, 소선이 20명, 중선이 30명, 대선이 40명으로서 계산되었다. 배를 중선으로 평균하여 1년에 조선에 사신으로서 내조한 인원수를 계산하면 특송사를 제외하고라도 공식적으로 1500명에서 2500명에 이르는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온 셈이 된다.

이들이 일단 삼포(웅천 체포·동래 부산포·울산 염포)에 정착하게 되면 각 사신의 지위에 따라 접대의례를 행하였다. 『해동제국기』에 나타난 접대 의례는 선왕(先王)의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조선의 개국 후부터 적어도 『해동제국기』가 찬진된 성종조까지의 접대 의례라고 보아야 하지만, 거의 조선 후기까지 조선조 전반에 걸쳐 일본사신 접대의 모범적 규례로서 적용하였다.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는 『해동제국기』의 서(序) 부분에 “그들을 만약 도리대로 잘 어루만져 주면 예절을 차려 조빙(朝聘)하고, 그렇지 못하면, 문득 함부로 표략(剽掠)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려 말기에 국정이 문란하여 그들을 잘 어루만져 주지 못하자, 드디어 그들의 침략을 받아 연해(沿海) 수 천리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로 기록된 바와 같이 왜적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로 동원된 접대의례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신 일행의 삼포 분박(分泊) 후에 경성으로 올라오는 사신의 숫자도 제한하였다. 국왕의 사신은 25인, 여러 큰 제후의 사신은 15인, 대마도주의 특송사신은 3인, 구주절도사의 사신은 3-5인<sup>59</sup>, 각 주 제후의 사신은 1-3인<sup>60</sup>, 관직을 받은 사람은 2-3인, 대마도에서 보내는 배 50척에서 배1척 마다 1-2인<sup>61</sup>으로 한정하였다(『해동제국기』).

## 2. 일본 사신 접대에서의 일상식과 연회식

### (1) 일상식

① 삼포(三浦)에서의 일상식 공궤(供饋)인 숙공(熟供)<sup>62</sup>

삼포(三浦)에서의 일상식 공궤(供饋)는 두 부류로

의 서북방에 있음.

56) 큰 제후의 사신(巨酋)은 산성주의 전산(山山)·세천(細川)·좌무위(左武衛)·산명(山名)·경극(京極), 주방주의 대내(大內), 축전주의 소이(少二)에서 보낸 사자를 말함.

57) 구주의 절도사란 서해도의 큐슈(九州)지방을 말함.

58) 고사기(古事記)에는 진도(津島),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대마국(對馬國)으로 기록됨. 「대마」는 「진도」의 대음역(對音譯)으로서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의 왜인전(倭人傳)조에 “대마국”이란 것이 처음 나오고 『수서(隋書)』 「왜국전(倭國傳)」에는 도사마국(都斯麻國)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륙의 국방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화개신(大和改新) 이후에 특수한 규정을 설치하여 태재부(太宰府) 관하에 두었다. 무가(武家) 지배에 대하여는 문치(文治) 원년(고려 명종15, 1185)에 수호인 하내오랑의장(河內五郎義長)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고, 관희(寬喜) 2년(고려 고종 17년, 1230)에는 축전(筑前) 등과 함께 태재소이(太宰少貳) 무등자능(無藤資能)의 수호직이 되어 14세기경까지 계속되었다. 무등씨에게 상속되었던 종씨(宗氏)가 14세기 말에 수호가 되었는데, 종 경무(宗經茂)가 무등씨를 배경으로 기반을 닦아 대마도 만호(對馬島萬戶)라 칭하고 고려와 통교(通交)하였다. 그 뒤 종씨가 지배권을 장악하는 동시, 조선의 해적 금제(海賊禁制) 정책에 호응하여 무역상의 특권을 획득, 15세기 중기에 통일을 완성했는데, 종 정국(宗貞國)이 근거지를 좌하(佐賀)에서 국부중촌(國府中村) 즉 지금의 엄원(嚴原)으로 옮겼다. 이때 일본 내륙의 쟁패(爭覇)의 영향을 받았으나 바다에 떨어져 있으므로 조선 무역의 이권을 독점할 수 있었다. 경제적 사정이 자체에서 세력을 성장시킬 수 없으므로 16-17세기의 변혁기에 변정시대(濳政時代)로 들어갔으며, 덕천 막부의 지배하에서는 조선 외교를 담당하여 부산 무역의 특권을 지속하면서 명치 유신(明治維新)에 이른 것이다.

14세기 말 이후 종씨(宗氏)가 대대로 도주(島主)가 되었는데 종증상→종조국→종성명→종성국→종경무(宗經茂)→종너무→종정무→종정성(宗貞盛)→종성직→종정국→종제성→종의성→종성장→종정성→종정강→종의조→종무상→종의순→종의지→종의성→종의진→종의륜→종의방→종의성→종방회→종의어→종의빈→종의창→종의공→종의질→종의장→종의화→종의달→종증망→종무지(36代)로 이어진다. 조선과의 교역에서 매년 보내는 선척의 숫자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종정성(宗貞盛) 때에 (세종 25년, 1443) 비로소 50척으로 약정하였다(계해약조). 또한 일본 각 주에서 조선에 보내는 배도 반드시 대마도주(對馬島主) 종(宗)씨의 문인(文引)을 지참하여 증빙토록 약정했고, 또한 소선월(小船越)을 조선에 왕래하는 기항지로 약정했다.

59) 짐이 5마리(駄)가 넘으면 1인을 증가하는데, 5인을 초과하지는 못함.

60) 짐이 5마리가 되면 1인을 증가하되 3인을 넘지 못함.

61) 짐이 5마리가 되면 1인을 증가하되 2인을 넘지 못함.

62) 숙공(熟供) : 조리해 익힌 음식으로서 공궤(供饋)한다는 뜻. 여기에서는 일상식 공궤를 뜻함.

	숙공(熟供)	료(料)
막부[國王]의 사신	정사·부사·수행원정관 (正官, 선주 및 압물시봉 <sup>①</sup> )	선부(船夫)(하루 두끼의 료)
여러 큰 제후의 사신	정사·부사·수행원 정관	선부(하루 두끼의 료)
절도사 및 특송사	정관이상	선부(하루 두끼의 료)
각주 제후의 사신 및 관직을 받은 사람		전부 료를 줌(하루 두끼의 료)

① 압물시봉(押物侍奉) : 물건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표 1〉 『해동제국기』에 기록된 삼포(三浦) 숙공(熟供)

대상	飯	早飯	朝夕飯	晝點心
막부[國王]의 사신 (정사·부사·정관) ①		車食七果床 三度湯	七樸床의 밥과 국 二樣湯, 二樣炙	五樸床의 밥과 국 一樣湯
막부[國王]의 사신 수행원		車食五果床 三度湯	五樸床의 밥과 국 二樣湯, 一樣炙	三樸床의 밥과 국 一樣湯
여러 큰 제후의 사신· 절도사·특송사		乾魚가 主樸인 五果床, 三度湯	七樸床의 밥과 국 二樣湯, 二樣炙	五樸床의 밥과 국 一樣湯

① 정관에게는 朝夕飯에서, 사신 수행원과 같은 5첩상의 밥과 국을 차렸음.

상기와 같이 분류하였다. 하나는 조리해서 익힌 음식을 공계하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료(料)를 주는 부류이다.

계급별로 분류한 숙공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반(早飯)·조석반(朝夕飯)·주점심(晝點心)에 거식칠과상(車食七果床)·거식오과상(車食五果床)·오과상(五果床)·칠첩상(七樸床)·오첩상(五樸床)·삼첩상(三樸床)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의 조반(早飯)에 나타나 있는 거식칠과상(車食七果床)·거식오과상(車食五果床)이란 표현은 7가지 과일 또는 5가지 과일을 차리는 4사람이 운반하는 식상(車食床)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지금의 교자상의 크기 정도 일 것이다. 삼도탕(三度湯)이란 탕을 세 번 올린다는 것으로, 거식칠과상·거식오과상과 함께 삼미(三味)의 탕을 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그림 3은 표1에 나타나 있는 『해동제국기』의 삼포숙공을 기초로 하여 1609, 1643년의 『영접도감의궤』 및 조선조 반상차림과 『조선왕조궁중의궤』를 참고하면서 저자가 도식화한 것이다(『영접도감의궤』 1609), (金b, 64), (金c, 412-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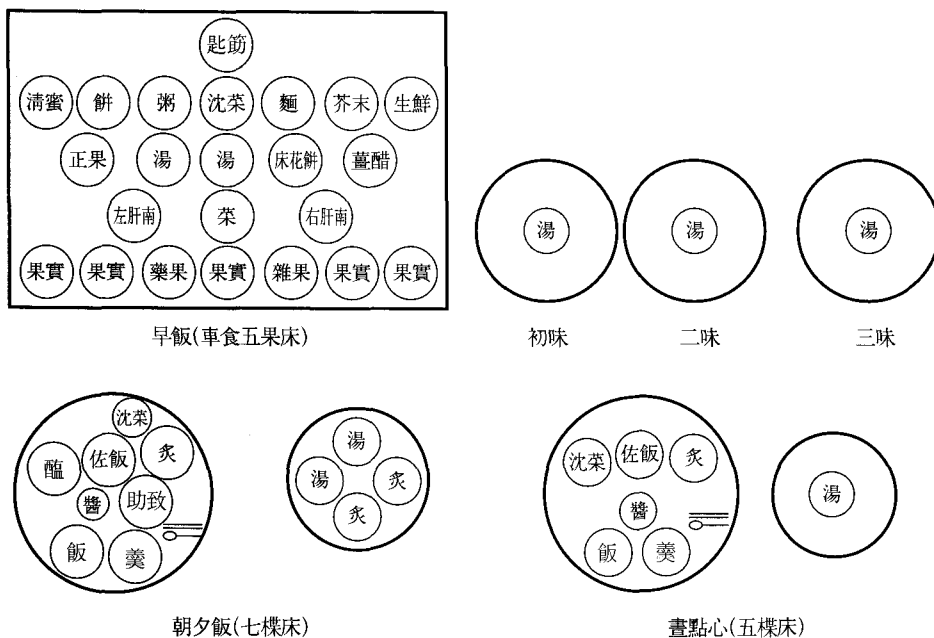
그림 4는 1609년과 1643년 명나라 사신에게 제공된 早飯床도인데, 이 그림은 약간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1행은 과물류, 제2행은 간남류, 제3행은 탕·정

과·만두, 제4행은 죽·국수·떡·편육, 제5행은 시저(匙筋)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4의 상차림을 일본 사신에게 접대한 『해동제국기』의 早飯床과 관련시켜 보면, 그림 4의 1609년에 해당되는 것이 거식삼과상(車食三果床)이고, 1643년에 해당되는 것이 거식칠과상(車食七果床)이 된다. 제1행의 과물류가 5종류일 경우에는 거식오과상(車食五果床)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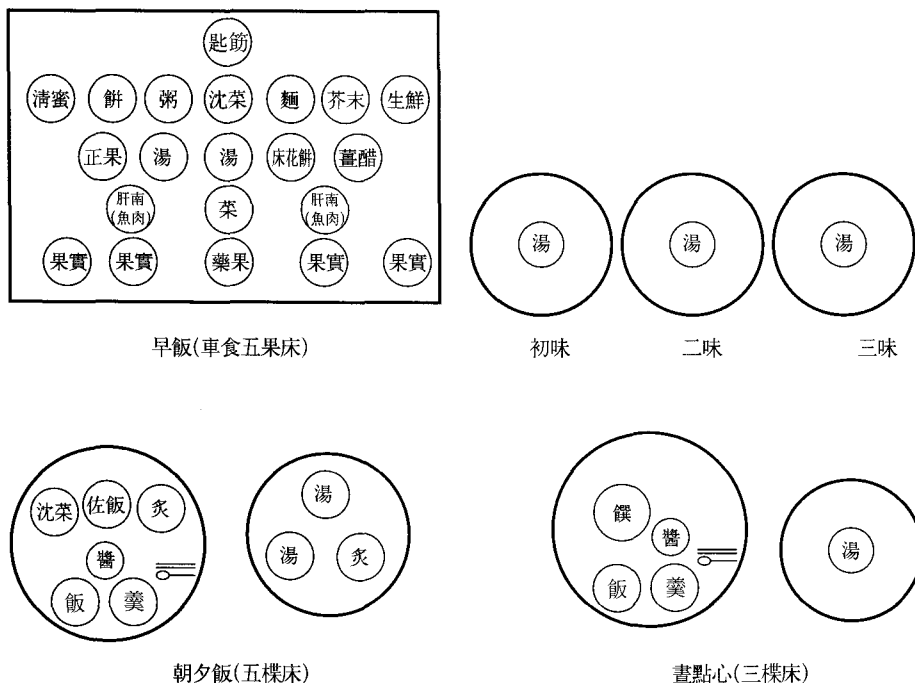
따라서 명나라 사신에게 제공된 그림 4와 같은 早飯床에서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일본 사신에게 제공된 早飯床圖를 유추해 낼 수 있다. 『해동제국기』에는 早飯床의 구성이 “거식칠과상·三度湯”, “거식오과상·三度湯”으로 되어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1과 그림 2에는 조반상인 거식칠과상·거식오과상 외에 초미·이미·삼미로서 탕이 더 추가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 사신 접대를 위한 일상식에서 조반(早飯)만은 숙공(熟供)하여 주고, 나머지 조반(朝飯)·석반(夕飯)·주점심(晝點心)은 사신 일행이 원할 경우에는 식품의 재료를 공급하였으나, 조선 중기에는 1특송사와 대차왜(大差倭)의 경우, 숙공은 5일 동안 하였고, 이 5일의 숙공 기간 중 2일 동안은 조반(早飯)의 경우 숙공조반식(熟供早飯式)이 있어서 쌍방이 주찬(酒饌)을 내어 대접하는 의례를 하였다. 『통문관지』에 기록되어 있는 숙공조반식 항목에는 “하선다례(下船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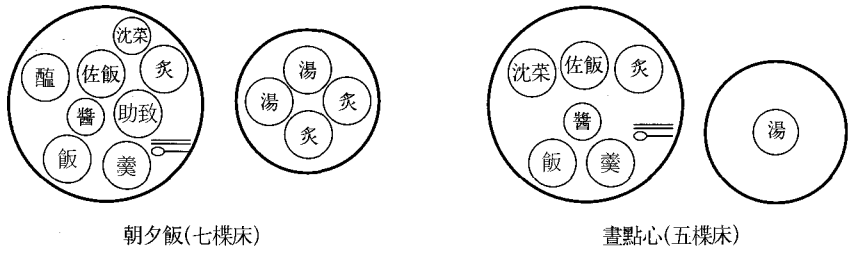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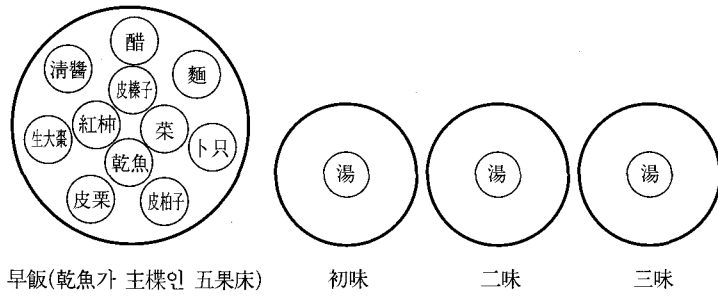




〈그림 1〉 일본 막부[國王]의 사신인 정사·부사·정관을 위한 삼포에서의 숙공 및 京中日供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64), (金c, 412-413).



〈그림 2〉 일본 막부[國王]의 사신 수행원을 위한 삼포에서의 숙공 및 京中日供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64), (金c, 412-413).



〈그림 3〉 여러 큰 제후의 사신·절도사·특송사를 위한 삼포에서의 숙공 및 京中日供.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64.), (金c, 412-413).

禮) 다음 날 훈도(訓導)<sup>63</sup>와 별차(別差)<sup>64</sup>가 편복(便服)을 입고 왜관 대청에 나아가 동쪽벽에서 서쪽을 향해 서면, 정관(正官) 이하 봉진압물(封進押物) 등은 모두 서쪽벽에서 동쪽을 향해 서서 서로 마주 보고 읍한 후에 각각 자리로 나가 앉는다. 왜통사(倭通詞)로 하여금 말을 전하고 이어서 찬을 내 놓는데 또 삼색죽이 있다. 5번의 술을 순배한 후에 다시 한잔을 권함이 다례의(茶禮儀)와 같다. 왜사 역시 주찬을 내어 대접한다. 시봉과 반중 등에게도 별도의 장소에서 찬을 준다”는 것이다(『통문관지』 卷5, 「交隣」).

조선 중기의 이러한 숙공조반식(熟供早飯式)은 의례히 조선 전기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림 1에서 그림 3까지의 일상식 중 가장 규모를 크게 차린 것이 早飯床이고 또 탕을 세 번 올리는 “三度湯”이 있었기 때문이다. 三度湯의 初味·二味·三味는 술안주인데, 조선 중기에는 이 “삼도탕”에다 “삼색죽”까지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早飯床과 三度湯이 술과 더불어 어떻게 “숙공조반식”이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조반상·술제1잔→술제2잔·초미→술제3잔·2미→술제4잔·3미→술제5잔의 술 다섯 순배로서, 사신에 대한 이와 같은 진행의 술 순배 의례는 태종 2년의 『실록』에 나타나고 있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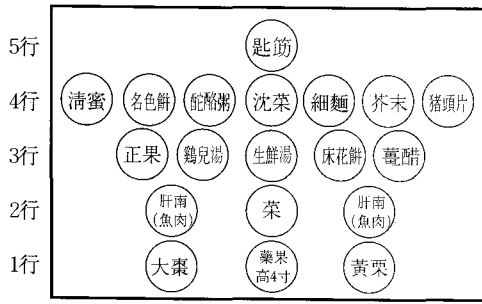
종실록』 태종 2년 6월 丁巳條).

그림 3의 早飯인 건어(乾魚)가 주첩(主樑)인 오과상(五果床)은 거식(車食)이란 표현이 없는 단순한 5가지 과일 차린 상이기 때문에 원반에 차려진 早飯床이다. 조선왕조는 엄격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 접대 때에도 가장 높은 신분인 천사(天使)에게는 사각상을 두목(頭目)에게는 원반을 조반(早飯)에 올렸기 때문에 그림 3의 早飯인 오과상은 원반으로 도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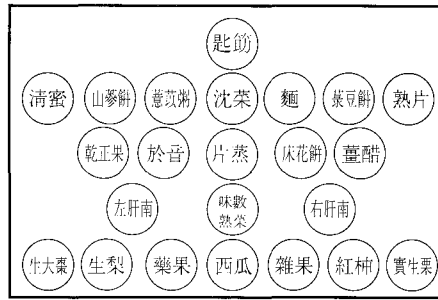
표 1의 朝夕飯과 晝點心인 3첩상·5첩상·7첩상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 그림 1-3의 조석반과 주점심이다. 조선조의 반상차림은 『조선왕조의궤』상에 그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1609년·1795년의 의궤 상에는 종지(장류를 담은 그릇, 초장·간장·고추장·겨자 따위)를 제외한 총 음식을 담은 그릇의 숫자로 ○첩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표 1의 3첩상·5첩상·7첩상은 그림 1-3에 도식화 된 바와 같은 상차림으로 도식

63) 훈도(訓導) : 조선시대 지방의 郡·縣의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종9품의 벼슬 또는 벼슬 아치. 倭學訓導는 부산포·제포에 각각 1명을 두었고, 왜관의 왜인을 접대하고 譯學의 학생을 가르쳤다.

64) 별차(別差) : 定例외에 벼슬아치를 따로 임명하는 일 또는 그 벼슬아치.



(1609년)



(1643년)

〈그림 4〉 명나라 사신에게 제공된 早飯床 그림, 1609, 1643년.  
(金b, 64).

화 될 수 있다. 5첩상과 7첩상은 1795년 당시 최고의 양반 계층의 일상식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해동제국기』에 나타난 사신 접대를 위한 5첩상·7첩상은 사신을 조선조의 양반 수준으로 접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金b), (金c, 403-432). 표 1의 조석반·주점심에 나타나 있는 2양탕(二樣湯), 2양적(二樣炙)은 두 종류의 탕과 두 종류의 적으로 해석 된다. 즉 사신 접대에 따른 특별 배려로, 3첩상·5첩상·7첩상에 탕과 적을 더 추가한 가찬(加饌)에 해당 된다.

일상식에서의 상차림은 조선조 전기 왕조의 궁중에 서도 5첩을 넘지 않게 하였다. 세종 4년(1422) 예조에서는 “태상왕을 위하여 수륙재를 올릴 때에는 임금의 집안 사람이나 본 예조의 관리나 할 것 없이 모두 종전에 규정해 놓은 인원수대로 대인은 1명, 각 궁전의 속고적은 모두 8명, 별감과 어린 내시는 모두 10명, 향불을 피우는 관리, 임금의 집안 사람, 본 예조의 당상관·당하관·축문 읽는 관리는 각 1명으로 할 것입니다. 대인과 속고적 이외에는 밥상을 내지 못하게 하고, 밥상은 5첩을 넘지 못하게 하며, 명정 앞이나 부처님과 중을 대접하는 이외에는 만두·국수·떡과 같은 사치한 음식을 일체 금지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의하고 있다. 즉 7첩상·만두·국수·떡은 “사치”의 범주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세종실록』 卷16 세종 4년 5월 癸酉條).

## ② 경중일공(京中日供)

사신이 경성에 머무르는 동안에 공제되는 일상식은 삼포(三浦) 숙공(熟供)과 같다(그림 1-3). 다만 사신 일행이 숙공 형태가 아니라 재료로서 받기를 원할 경우 조반(早飯)만은 숙공하여 주고 朝夕飯 및 晝點心은 5일에 한번씩 함하여 주었다. 1인마다 5일에 한번씩 함

하여 준 세 끼의 재료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정사·부사·정관·여러 큰 제후의 사신·대마도 특송사와 절도사<sup>65)</sup>

중미(中米) 2말(斗)	밀가루(眞麥末) 7되(升)
황두(黃豆) <sup>66)</sup> 6말(斗)	건전복(全鮑) 150개(介)
조기(石首魚) 5마리(尾)	청어(靑魚) 20마리(尾)
새우젓(白蝦) 3되(升)	준치(眞魚) 2마리(首)
생선(生鮮) 5마리(首) <sup>67)</sup>	소금(鹽) 5홉(合)
참기름(眞油) 2홉(合)	장(醬) 3되(升)
초(醋) 1되 5홉(1升5合)	미역(藿) 10냥(兩)
겨자(芥子) 2홉(合)	차(茶) 1홉(合)
청주(淸酒) 3병(瓶)	숯[炭] 2말 5되: 2월부터 9월까지
	5말 5되: 10월부터 정월까지

멜나무(燒木) 35근(斤)

수행원·각 주의 제후의 사신<sup>68)</sup>

중미 2말	메밀 [木麥米] 5홉
황두 4말	

65) 대마도 특송사와 절도사에게는 밀가루·준치·생선·건전복·차·참버섯은 없음.

66) 정관(船主 및 押物侍奉)은 콩[太] 5말로 함.

67) 사신일행 중에 중이 있을 경우 중(僧)에게는 생선류와 젓갈류를 빼고 대신 참버섯(眞茸), 표고버섯(蕈占), 죽순(竹片), 오해소(吾海召) 각 5홉(合) 씩 준다.

68) 수행원 중에 중이 있을 경우 정사의 예와 같이 함.

각주 제후의 사신 이하는 조반(早飯)은 숙공하여주고, 하루 두끼의 식품 재료를 1인 마다 5일에 한번씩 함하여 받는데 중미 1말 5되, 황두 3말(수행원은 2말) 청주는 2병으로 하였다.

이하는 정사·부사·정관·여러 큰 제후의 사신·대마도 특송사와 절도사에게 도급한 예와 같다(『해동제국기』).

한사람 앞에 5일에 한번씩 도급한 상기의 재료를 통하여 조선전기의 손님접대용의 주식·부식·조미료·음료의 재료가 확실히 구분되고 있는데 주식으로는 쌀·메밀·밀가루·황두, 부식으로는 미역·건전복·조기·청어·새우젓·준치·생선, 조미료로는 소금·참기름·장·초·겨자, 음료로는 차와 청주가 사용되고 있었다.

2) 연회식

① 삼포(三浦)에서의 연회

사신이 삼포에 체류하는 동안 사신의 직급별로 연회를 베풀었다. 『해동제국기』의 기록을 보면

	체류중	돌아갈때
막부[國王]의 사신	3회 : 1회는 선위사(宣慰使) 2회는 차사원(差使員)	1회(차사원)
여러 큰 제후의 사신	2회(차사원)	1회(차사원)
절도사 및 특송사	1회(차사원)	1회(차사원)
각 주 제후의 사신 (일기도는 제외)	1회(차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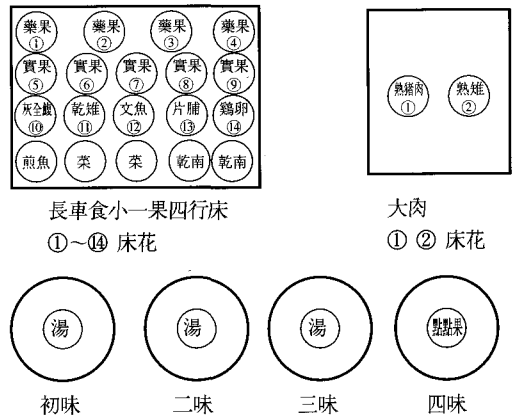
와 같다. 삼포에서의 선위사(69)와 차사원(70)이 각각 차린 연회는 표 2와 같이, 장거식(長車食)·마제거식(馬蹄車食)·三度湯·점점과·大肉을 각각 차리고 있고, 이들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5와 그림 6이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대상 외에 배에 머물러 있는 선부(船夫)에게는 매일 마다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밀가루 1되 [升]  
기름 1홉[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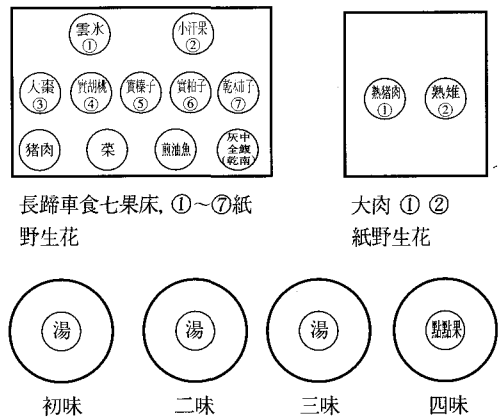
〈표 2〉 『해동제국기』에 기록된 삼포(三浦)에서의 연회

	선위사(宣慰使)	차사원(差使員)
막부[國王]의 사신인정사, 부사, 정관①	장거식 [長車食]으로 小一果四行床, 안주.	마제거식으로 四行床, 안주.
막부[國王]의 사신 수행원, 여러 큰 제후의 사신, 절도사, 특송사	馬蹄車食七果床에 紙野生花가 있다. 三度湯, 點點果, 大肉(꿩과 돼지).	馬蹄車食七果床에 紙野生花가 있다. 三度湯, 點點果, 大肉(꿩과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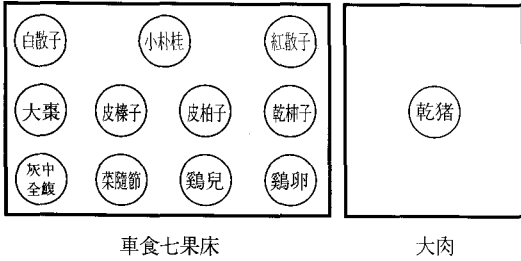
① 正官에게는 선위사가 차린 연회에서 小一果의 내용물 중 1가지 과일이 적으며, 차사원이 차린 연회에서는 正官 對客(내시부의 관원)에게 四行床 대신 三行床을 차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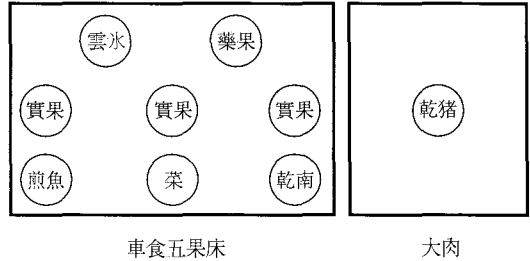
〈그림 5〉 삼포(三浦)에서 행한 선위사(宣慰使)의 정사·부사·정관을 위한 연회 진설도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7-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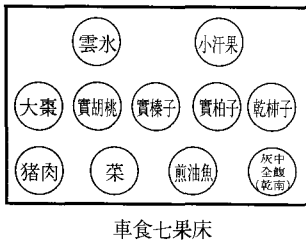
〈그림 6〉 삼포(三浦)에서 행한 선위사(宣慰使) 차사원(差使員)의 수행원. 여러 큰 제후의 사신·절도사·특송사를 위한 연회진설도.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7-108).)



〈그림 7〉 정사·부사를 위한 경중영전연(京中迎餞宴).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7.).



〈그림 8〉 정관 이하를 위한 경중영전연(京中迎餞宴).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8.).



〈그림 9〉 정사·부사·정관·각 제후의 사신을 위한 주간의 술대접 [畫奉杯]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7-108.).

노연

		막부[國王]의 사신	여러 큰 제후의 사신	절도사·특송사	각 주 제후의 사신①	대마도
경상도②	관찰사가 차림	1곳	1곳			
	수령이 차림	1곳	1곳	1곳	1곳	1곳
	수령이 차림	1곳				
충청도	관찰사가 차림	1곳	1곳	1곳	1곳	
경기도	관찰사가 차림	1곳	1곳			

① 일기도는 제외함

② 관찰사의 연회 물품은 삼포 선위사의 연회와 같고 수령의 연회 물품은 삼포 차사원의 연회 물품과 같다

건어(乾魚) 1마리(首)  
생어육(生魚肉) 적당량  
백주(白酒) 1복자(鐺)

② 노연(路宴)

사신이 삼포에서부터 경성으로의 왕복행때에 차리는 연회를 노연이라 하였다. 이 노연에는 사신의 직급 별로 상기와 같이 차려 졌다.

③ 경중 영전연(京中迎餞宴)

막부[國王]의 사신은 한강에서 영접하고 연회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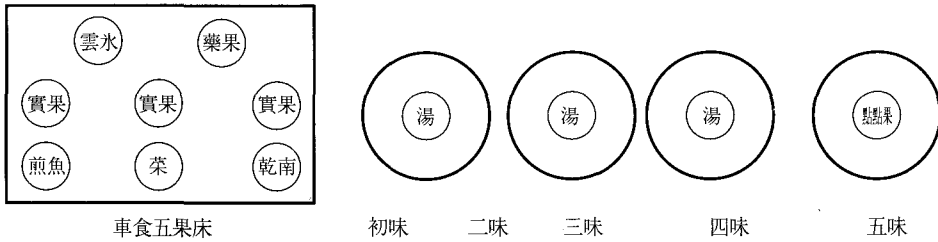
여러 제후의 사신은 사관(使館)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연회하는데, 이들의 음식상은 아래와 같다.

정사·부사: 거식칠과상(車食七果床)·대육(乾猪)<sup>71)</sup>·술  
정관이하: 거식오과상(車食五果床)·대육(乾猪)·술

69) 선위사(宣慰使): 임금의 명을 받아 외국사신을 영접·위로하던 임시벼슬.

70) 차사원(差使員): 중요한 임무를 맡겨 임시로 파견하는 관원.

71) 정사·부사·정관 이하 합하여 대육으로 건저(乾猪) 3마리를 썼음.



〈그림 10〉 사신의 수행원을 위한 주간의 술대접 [畫奉杯]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8).

궐내연

막부[國王]의 사신 여러 큰 제후의 사신 특송사·절도사	의 정사 ·부사	다식·안주(安酒)·소일과 사행상·4가지탕·점점과·대육·사허을 거피(絲虛乙巨皮)①·사표화영락(絲表花纓絡)②·주향구(炷香具)③ ·술
정관과 대객(正官對客)④		마제거식사행상(馬蹄車食四行床)·4가지탕·점점과·대육·술
수행원과 대객		마제거식구과상·4가지탕·점점과·대육·술
각주 제후의 사신 이하		마제거식사행상·4가지탕·점점과·건대육·술
각주 제후의 사신이하의 수행원대객		마제거식구과상·4가지탕·점점과·건대육(乾大肉)·술

① 사허을거피(絲虛乙巨皮) : 의류를 이룬 것임.

② 사표화영락(絲表花纓絡) : 갓 끈.

③ 주향구(炷香具) : 심지와 향[焚香具].

④ 대객(對客) : 내시부의 관원.

예조연

막부[國王]의 사신 여러 큰 제후의 사신 특송사·절도사	의 정사 ·부사	산자·소일과사행상·저포화(紵布花)·4가지탕·점점과·대육·술
정관		장거식사행상(長車食四行床)·4가지탕·점점과·대육·술·지화 (紙花)
수행원		마제거식구과상·술·4가지탕·점점과·대육·지화(紙花)
각주 제후의 사신 이하		장거식사행상·4가지탕·점점과·대육·지화
각주 제후의 사신 이하의 수행원		마제거식구과상·4가지탕·점점과·대육·지화

돌아갈 때에는 모두 한강에서 전송하였다. 경중 영전 연 때의 연회상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7·그림 8이다.

궐내연을 상차림으로 도식화한 것이 그림 11과 그림 12이다.

④ 주간의 술 대접(畫奉杯)

주간의 술 대접은 3일에 한번씩 차리는데 그 내용은 그림 9·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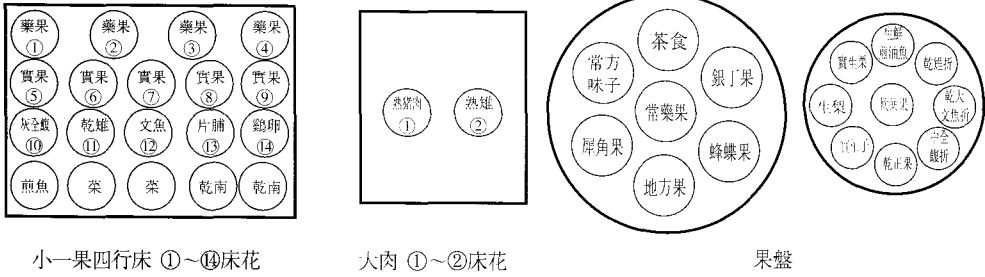
⑥ 예조연(禮曹宴)

예조연은 사신 위로연으로 그 진설은 상기와 같다. 이를 상차림으로 도식화한 것이 그림 13, 그림 14이다.

⑤ 궐내연(闕內宴)

막부[國王]의 사신은 진상숙배(進上肅拜)<sup>72)</sup>한 다음에 연회한다. 궐내연에서의 진설은 상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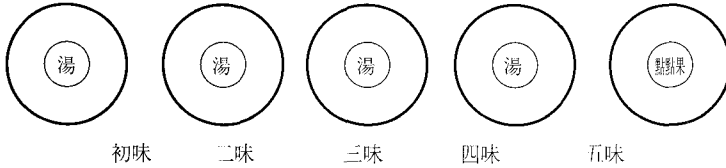
72) 진상숙배(進上肅拜) : 사은숙배임. 관에 임명된 뒤 대궐에 들어가 전정(殿庭)에서 네번 절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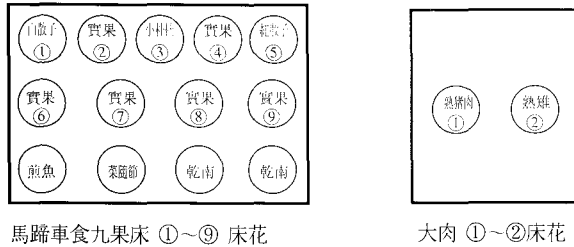
小一果四行床 ①~⑭床花

大肉 ①~②床花

果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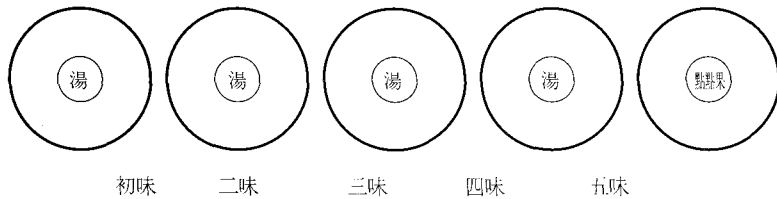


〈그림 11〉 국왕의 사신, 여러 큰 제후의 사신, 대마도 특송사, 절도사의 정사 및 부사를 위한 궐내 연에서의 연회상. 진상숙배와 하직숙배 때 2차 설연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70, 89, 108).



馬蹄車食九果床 ①~⑨ 床花

大肉 ①~②床花



〈그림 12〉 사신 수행원을 위한 궐내연에서의 연회상. 진상숙배와 하직숙배 때 2차 설연.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7).

⑦ 명일연(名日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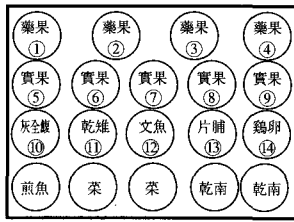
명일연을 위한 상차림은 그림 15, 그림 16와 같다.

(3) 하정(下程)<sup>7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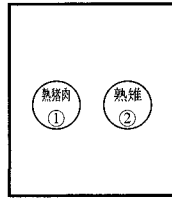
떡[餅]·술[酒]·과실·소채(蔬菜)·해채(海菜)·말린버섯(乾茸)·죽순(筍)·두부·밀가루(眞末)·꿀[清

蜜]·건어육(乾魚肉)·생어육(生魚肉)·젓갈(醃)·겨자[芥子]·오미자·차·기름[油]·장(醬)·초(醋)·를막부[國王]의 사신과 여러 큰 제후의 사신에게는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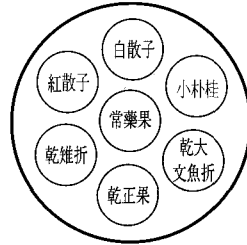
73) 하정(下程) : 외국의 사신 일행이 머무는 동안 숙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일. 처음에는 5일에 한번씩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날마다 지급하기도 하였다(例下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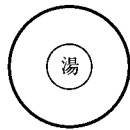
小一果四行床 ①~⑭ 紵布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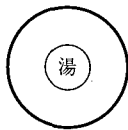
大肉 ① ② 紵布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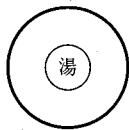
果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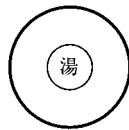
初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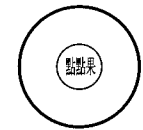
二味



三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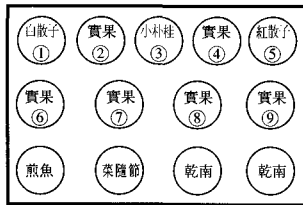


四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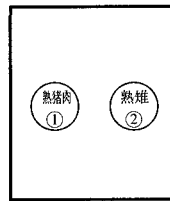


五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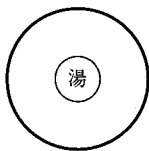
〈그림 13〉 막부[國王]의 사신, 여러 큰 제후의 사신, 대마도 특송사, 절도사의 정사 및 부사를 위한 예조연에서의 연회상, 위로연·전송연 2차 설연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70, 89,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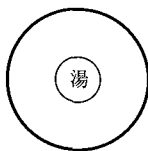
馬蹄車食九果床 ①~⑨ 紙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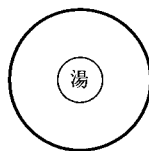
大肉 ① ② 紙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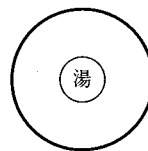
初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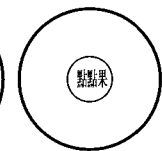
二味



三味



四味



五味

〈그림 14〉 사신 수행원을 위한 예조연에서의 연회상, 위로연·전송연 2차 설연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7).

특송사와 절도사의 사신에게는 2회 예조에서 급여하며, 승정원에서는 별하정(別下程)<sup>74</sup>을 똑같이 급여한다.

### 3. 연회에서의 상차림의 구성과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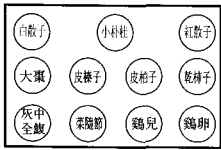
조선조 전기 왕조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의 연회상에는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 손님이란 중국의 명나라 사신과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명나라를 제외한 인접국

가의 사신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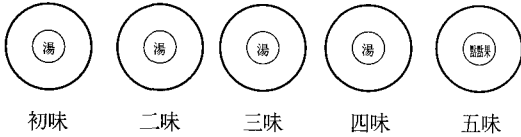
조선에서의 명나라는 天國으로, 명나라 사신인 天使가 내조할 경우에는 영접도감(迎接都監)을 설치하여 중국사신 영접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日本 사신에 대

74) 별하정(別下程) : 외국의 사신 일행이 머무는 동안 숙식에 필요한 물품을 특별히 지급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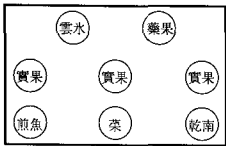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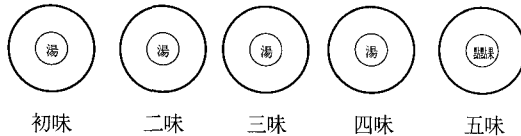
車食七果床



〈그림 15〉 정관이상(正冠以上)의 일본 사신을 위한 명일연 상차림.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7).



車食五果床



〈그림 16〉 일본사신 수행원을 위한 명일연 상차림.  
(申叔舟, 『海東諸國記』, (金b, 109).

한 영접의례를 구체화시킨 때는 태종18년(1418) 『세종실록』 卷1 태종 18년 9월 乙酉條의 일로서, 대마도 정벌로 주춧다가 세종1년(1419) 『세종실록』 卷5 세종 1년 10월 戊戌條 왜인에 대한 접대를 재개하였다.

명나라 사신에 대한 조선왕조 영접은 어디까지나 명나라를 상국으로 받드는 것이었지만, 일본 사신에 대한 조선왕조의 영접은 왜구 침입을 막기위한 하나의 정책 및 교역물자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선왕조는 매년 여러 호족들로부터 약 2000여명의 사신(使者)이 파견되어, 접대에 쫓기고 있었다.

조선이 중국(명나라)과의 종속관계를 기본으로 아시아 사회에서의 존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국제 질서 가운데서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우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고려가 폐망한 원인의 하나가 왜구의 침입이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더욱더 인정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사신과 일본사신에 대한 영접의례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과는 종속관계에서, 일본사신의 경우에는 만주 지역의 여진족과 같은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약 2000여명의 사신이 파견되어 접대에 쫓긴 것은 조선조 전기의 막부(足利幕府)가 약체였기 때문에, 막부뿐만 아니라 왜구 발생지인 서부 일본의 여러 호족과도 교빙하는 다원적 외교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시의 일본사신의 내조 상황에 대하여 세종1년(1419)의 『세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허조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일본에서 사신으로 오는 자들이 얼마되지 않더니만 몇 해 제부터 1차부터 바치는 자도 사신이라 하면서 장사를 할 목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꼬리를 물고 드나듭니다.……이제 왜관을 수도 밖에 만들어 놓고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종실록』 卷5 세종 1년 9월 癸亥條)

“임금이 말하기를 왜인에 대한 접대를 다시 시작하겠으니 예조에서는 의정부와 함께 대책을 토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성밖에도 왜인의 객관을 짓는 일이 당면한 급한 문제이다.”(『세종실록』 卷5 세종 1년 10월 戊戌條)

꼬리를 물고 드나드는 일본 사신을 위한 접대를 위하여 성밖에도 객관을 짓도록 한 실록의 한 대목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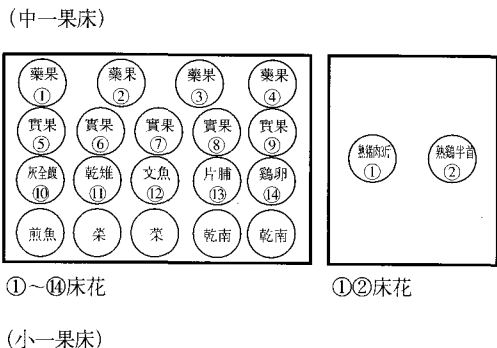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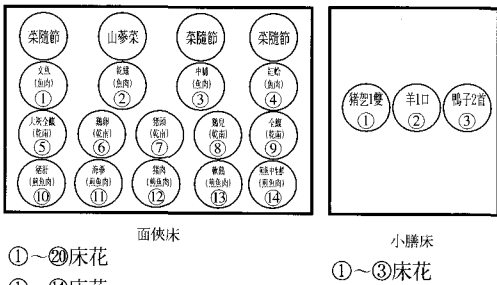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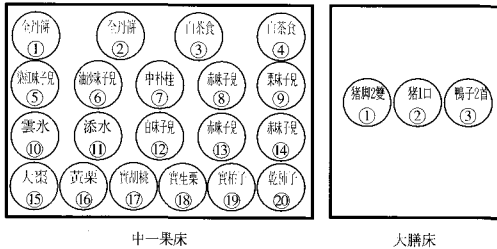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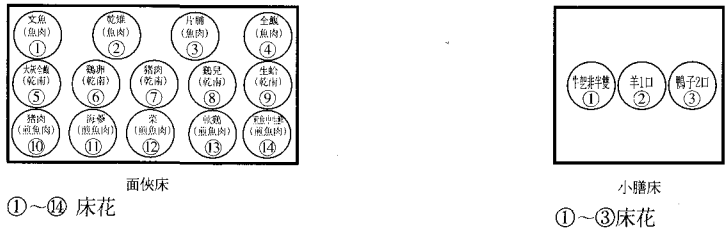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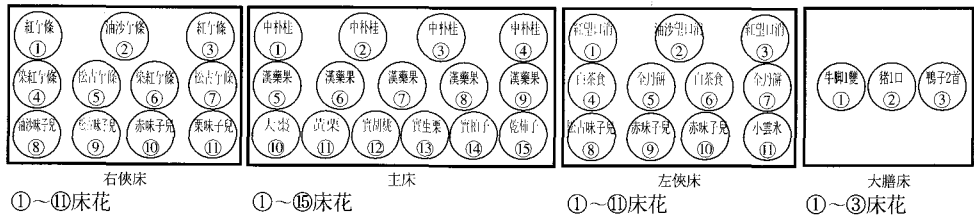
일본으로부터 매년 약2000여명에 이르는 사신의 파견에 따른 접대로 인한 엄청난 물자의 손실로 인하여, 급기야 태종은 1418년에 “이제부터 큰 나라의 사신을 위한 연회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차리는 연회에는 대탁(大卓)을 쓰지 말고 일과상(一果床)을 쓸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세종실록』 卷5 태종 18년 11월 乙亥條). 대탁(大卓)이란 큰 연회 때에 차리는 간반(看盤)<sup>75)</sup>으로 중국 사신을 위한 下馬宴과 上馬宴<sup>76)</sup>때에 올려지는 발 높은 상을 말한다.

1609년에 쓰여진 『영접도감의례』에 의하면 대탁(大卓)은 천사(天使)의 하마연·상마연에, 중일과상(中一果床)은 천사의 전연(錢宴)·익일연(翌日宴)·회례연(回禮宴)·청연(請宴)에, 소일과상(小一果床)은 두목(頭目)<sup>77)</sup>의 연향상에 해당되었다(金b, 82-109). (그림 17) 조선왕조가 외국 사신을 영접할 때에 차렸던 연회상의 종류가 대탁·중일과상·소일과상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세종5년(1423) 예조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데 수반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숙소에서

75) 간반(看盤) : 장식용 상.

76) 하마연(下馬宴) : 환영연, 상마연(上馬宴) : 환송연.

77) 두목(頭目) : 칙사와 함께 무역을 위하여 오는 사신 수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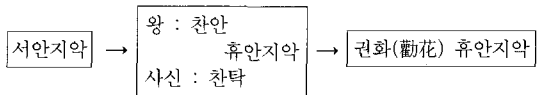


전례대로 바깥 상에다 4줄로 유밀과를 놓고 안쪽 상에다 생선·고기·나물·과일을 섞어 놓을 것이며, 점심 참에는 한 상을 4줄로 하되 바깥 줄에는 유밀과를 놓고 안쪽 3줄에는 생선·고기·나물·과일을 섞어 놓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소에서 차렸던 상은 중일과상이고, 점심참에서 차렸던 상은 소일과상에 해당된다(『세종실록』 卷22 세종 5년 10월 庚戌條). 그림 5~그림 16까지의 일본 사신 영접에 차려진 연회상들은, 명나라 사신 영접에서 두목들에게나 차렸던 수준의 연회상을 일본 사신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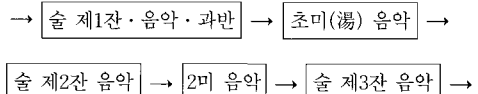
4. 연회에서의 상차림의 구성과 연회의례

그림 여기서 표 3과 표 4를 통하여 연회하는 의식을 살펴보고(『세종실록』 卷133 「五禮儀」(『국조오례의』 卷3), 이를 그림 11·그림 12의 필내연과 그림 13·그림 14의 예조연에서의 연회상의 구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세종오례의』에 기록되어 있는 "인국사신에게 연회하는 의식"은 그 내용이 성종 때에 찬정된 『국조오례의』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사실에서, 세종조에 완성된 "인국사신(隣國使臣)에게 연회하는 의식"은 조선 왕조 내내 기반이 되고 있었다.

필내연에서 왕이 이웃나라 사신에게 연회할 때에 행한 의례를 표 3과 『해동제국기』의 기록을 참고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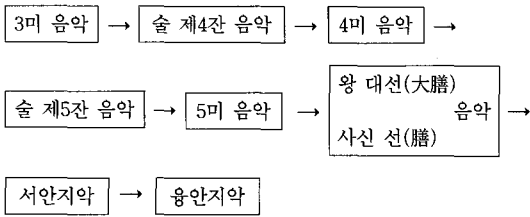


<그림 17> 1609년 조선왕조의 외국사신 영접 때에 차렸던 연회상의 종류에서의 간반(看盤). (金b, 82-109).



〈표 3〉 왕이 이웃나라 사신에게 연회하는 의식 『世宗實錄 第133卷』, 『國朝五禮儀 卷之3』

	전하가		자리로 올라갈 때	용안지악(隆安之樂)
	사신이하가 통사(通事)가	전하에게 사신을	서쪽 옆문으로 들어와서 국궁·사배·홍·평신한다. 인도함. 이때 사신은 서쪽 섬들로 올라가 자리로 간다. 전각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리로 인도 한다.	서안지악(舒安之樂)
	사용제조(司饗提調)가  별좌(別坐)가 집사(執事)가	전하에게  사자에게 전각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찬안(饌案)을 올린다. ※ 찬안을 올릴때는 어좌의 남쪽 섬들로부터 올리 고 찬안을 치울때에는 동쪽섬들로 치운다. 찬탁(饌卓)을 설치한다. 찬탁을 설치한다.	휴안지악(休安之樂)이 시작된다.  휴안지악이 그친다.
	근시(近侍)가 별사위(別侍衛)가	전하에게 사자에게	꽃(花)을 올린다. 꽃(花)을 올리면	휴안지악이 시작된다 휴안지악이 그친다.
	전악(典樂)이	가자(歌者)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동쪽 섬들과 서쪽 섬들로 갈라서 올라간 다음 제자리에 가서 선다.	
술(酒) 제1순배	사준제조(司尊提調)가 제조(提調)가 내시가	전하에게  전하의	주정(酒亭)상의 동쪽으로가서 제1잔에 술을 따른다.  끓어 앉아 술 제1잔을 올린다. ※잔을 올리고 잔을 물릴 때 모두 남쪽 섬들로 통하여 진행한다. 술 제1잔을 받아서 안(案)에 놓아둔다.	음악이 시작된다. (俗樂과 雜伎사용)
	별좌(別坐)가	사신에게	술을 권한다. 술을 다 마시면 ※잔을 올리면 음악이 시작되고 술을 다 마시면 음 악이 그친다.	음악이 그친다.
	사용제조가	전하에게	탕(湯)을 올린다. ※탕을 올릴때는 어좌의 남쪽섬들로 올리고 탕을 물릴 때에는 동쪽섬들로 물린다.	음악이 시작된다.
	별좌가	사신에게	탕을 권한다. 탕먹기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술(酒) 제5순배까지 1순배와 같은 형태로 돈다. 술의 순배후에는 탕(湯)을 올린다.				
	사용제조가 별좌가	전하에게 사자에게	대선(大膳)을 올린다. 선(膳)을 차린다.	음악이 시작된다. 음악이 그친다.
	제조가 별좌가	전하의 사자의	찬안(饌案)을 치운다. 찬탁(饌卓)을 치운다.	
	통사가 사자이하의 사람 들이  봉례랑이	사자이하의 사람들  사자이하의 사람 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몸을 굽히고(국궁鞠躬) 네 번 절한후(사배四拜) 일어나고(흥興) 몸을 편다(평신平身). 인도하여 나간다.	서안지악이 시작된다  서안지악이 그친다.
	판통례(判通禮)가 전하가	전하에게	서쪽 섬들로부터 올라와서 예를 마쳤음을 아뢴다. 내려와 여(輿)를 탄다.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간다.	용안지악이 시작된다 용안지악이 그친다.



여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 연회에서의 상화(床花)와 잠화

왕과 사신에게 첫 번째 차린 찬안 또는 찬탁은 간반(看盤)으로 연회 중에는 이 상에 올려진 음식은 먹지 않는다. 장식용의 발높은 상에 상화(床花)를 꽂아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상이다. 『해동제국기』에 의하면 예조연에서 상화로 저포화(紵布花)를 사용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예조연보다 격이 높은 궐내연에서의 상화는 견(絹)으로 만든 상화로 추정된다. 그림 11에서 보면 小一果四行床이 장식용의 발 높은 상에 해당된다.

찬안 또는 찬탁을 차린 후에 행해지는 “꽃을 올린다.”는 권화(勸花)이다. 『해동제국기』의 예조연에서 권화로 저포화를 역시 사용한다 하였으므로 궐내연에서의 권화는 저포화보다 한 단계위인 견(絹)으로 만든 조화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헌적인 탐색에 의하면 연회 때에 사용되는 조화에는 등급이 있었다. 絹花→紵布花→紙花로서,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하였는데, 연회때에 사용되는 상화(床花)와 모자에 꽂는 꽃은 연회의 규모와 장소·조선왕조의 제정형편에 따라서 달리하였다. 명(明)사신을 접대 할 때에 같은 견(絹)으로 만든 꽃이라 하더라도, 경성·평양·황주·류후사에서는 실로 만든 꽃과 실로 만든 봉황새를 썼으며, 이 밖의 각 도, 각 고을에서는 모두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만든 꽃을 썼고(『세종실록』 卷22 세종 5년 10월 庚戌條), 연회상에 꽂는 꽃과 모자에 꽂는 꽃은 사신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卷24 세종 6년 5월 癸卯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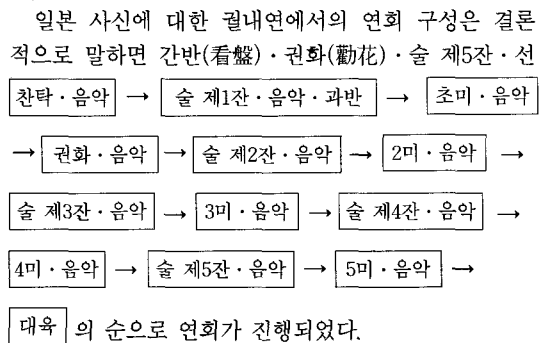
### 6. 연회 상차림에서의 미수(味數)

그림 11의 初味·二味·三味·四味·五味는 술 제5잔을 위한 술안주이다. 이때 술 제1잔을 올릴 때에 술안주로 올리는 것이 과반(果盤)으로서, 실제적으로 연회 때에 먹는 음식상은 과반과 味數(初味서부터五味까지)로 구성된 안주(安酒)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1의五味에는 점점과(點點果)가 등장하고 있다. 점점과

는 밤(生栗)·홍시(紅柿)·배(生梨) 등을 말하는 것이다. 세 가지 과일을 한 그릇에 담은 것을 점점과라 칭하였다.(金b, 111,302)(『영접도감의궤』 1643).

### 7. 연회상차림에서의 대신(大膳)

표 3에 등장하는 선(膳)은 그림 11의 대육(大肉)에 해당된다. 이 대육은 술 제5순배 이후에 올리는 것으로 소·돼지·양·오리·꿩 등의 숙육이 보편적으로 차려졌다. 그러나 『해동제국기』에는 계급이 낮은 사신들에게 건저(乾猪)도 대육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대육인 선(膳)은 술의 순배가 끝난 후에 올리는 일종의 사찬(賜饌)에 해당된다(金b, 302).



(膳)·음악이 어우러진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의 예조에서 이웃나라 사신에게 연회하는 의식(예조연)에 나타난 것과 『해동제국기』에 기록된 것을 종합해 보면

그림 13의 小一果四行床은 궐내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식용의 발 높은 상으로 저포화(紵布花)를 상화(床花)로 한 찬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상의 연회회례는 궁중에서 행하였던 사신접대의례이고, 선위사가 차린 삼포연(그림 5, 6)과 주간의 술대접(그림 9, 10)에서는 술이 5순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味が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大肉이 술제1잔의 안주로 올려진 것이며 초미서부터 4미까지는 술제2잔에서 술제5잔까지의 안주로 제공된 것이다. 대육이 사찬의 용도가 아니라 술안주로 제공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주간의 술대접에는 대육이 없이 4味が 제공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거식칠과상(車食七果床)이 술제1잔의 안주로 올려진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 8. 연회상차림에서의 기용(器用)

이들 찬품을 담은 그릇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세종1년(1419)에 세종이 지시하기를(『세종실록』

〈표 4〉 예조에서 이웃나라 사신에게 연회하는 의식 『世宗實錄 第133卷』 『國朝五禮儀 卷之3』

	압연관(押宴官)이하의 관원이 사자가  압연관과 판서가 사자가 참관이  ③종사관(從事官)이 종사관이 ⑤반중(伴從)이	①압연관과 판서에게 사자에게 참판에게 사자에게  압연관과 판서에게 참판에게	각각 좌석 앞에 나아가서 선다. ②공수재배(控首再拜)한다 ※ 사자는 서문으로부터 들어와서 정청(正廳, 대청)에 오름. 공수답배(控首答拜)한다. 공수재배한다. 공수답배한다. 이를 마치면 모두는 좌석 앞에 나아가서 선다. 뜰아래에서 ④돈수재배(頓首再拜)한다.  돈수재배한 다음 좌석에 나아간다. 돈수재배한 다음 남쪽에서 재배하고 물러나와 자리 앞으로 가서 선다.	
	집사자가 집사자가 집사자가	사자에게 압연관·판서·참판에게 종사관에게	찬탁을 설치한다. 찬탁(饌卓)을 설치한다. 찬탁을 설치한다.	음악이 시작된다.  음악이 그친다.
술(酒) 제1순배	압연관이 집사자가 사자가 집사자가	사자에게 사자에게 압연관에게 압연관에게	술제1잔을 올린다. 과반(果盤)을 올린다. 술제1잔을 올린다. 과반을 올린다.	음악이 시작된다.  음악이 그친다.
			※ 부사(副使)의 술돌리기를 위와 같이 한다. ※ 종사관이 압연관 앞에나와서 꿇어앉아 술을 받아 마신다. ※ 판서·참판의 술돌리기를 위와 같이 한다.	음악
	집사자가 집사자가 집사자가	사자에게 압연관·판서·참판에게 종사관에게	탕을 올린다. 탕을 올린다. 탕을 올린다.	음악이 시작된다.  음악이 그친다.
집사자가 집사자가 집사자가	사자에게 압연관·판서·참판에게 종사관에게	꽃을 올린다. 꽃을 올린다. 꽃을 올린다.	음악이 시작된다.  음악이 그친다.	

술(酒) 제3순배까지 1순배와 같은 형태로 돈다. 술의 순배 후에는 탕을 올린다.

반중에게 자리를 앉게 한 다음 탁자를 설치한다. 꽃을 권한다.

술(酒) 제5순배까지 3순배와 같은 형태로 돈다. 술의 순배 후에는 탕을 올린다.

다만, 반중에게도 술을 돌리고 탕을 차린다.

탁자를 치운다. 사자이하의 사람이 일어나면 압연관 이하의 관원이 모두 일어나서 보낸다.

- ① 압연관(押宴官) : 연회를 관리하고 주재하는 관원.
- ② 공수(控首) : 9배(九拜)의 하나인 공수(空首). 상체를 앞으로 굽혀 머리를 팔장을 낀 높이 만큼 숙이며 하는 절. 또는 두손을 잡고 땅에 댄 다음 머리를 손에 닿도록무릎을 꿇고 하는 절.
- ③ 종사관(從事官) : 선주(船主)·압물관(押物官) 압물관이란 사신을 수행하며 공물(貢物)과 교역하는 물품등을 관리하는 관원. 정관(正官)에 해당.
- ④ 돈수재배(頓首再拜) : 머리를 조아리며 두번 절을 함.
- ⑤ 반중(伴從) : 사신을 따라온 사람. 수행원.

卷3 세종1년 정월 辛亥條

“금과 은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공물도 계속해 대기가 곤란한 판에 술그릇과 음식그릇으로 뒷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임금에게 올리거나 임금이 쓰는 그릇, 대궐안에서 사용하는 술그릇 및 큰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그릇...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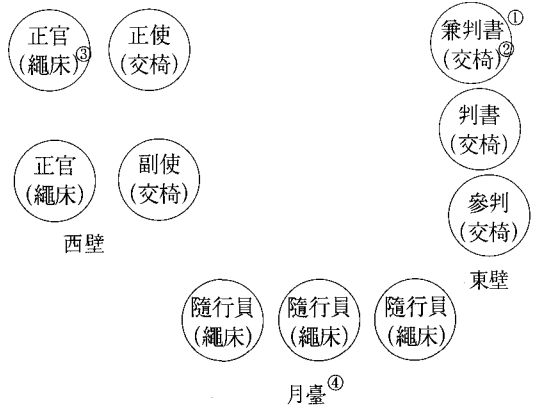
또 세종2년(1420)에 예빈시 판사 김소 등이 이야기하기를(『세종실록』 卷7 세종 2년 정월 戊戌條)

“우리 예빈시에서는 붉은 빛깔의 옷칠을 한 그릇과 닳그릇을 해마다 사 들고 사기그릇과 나무그릇도 해마다 공납으로 받아들이건만 연회를 한번만 치르고 나면 절반 이상이 없어져서 그 때마다 그릇을 맡은 자에게 나누어서 물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조선초 초기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그릇은 금그릇·은그릇·붉은 빛의 옷칠한 그릇·닳그릇·사기그릇·나무그릇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금그릇은 술잔으로 은그릇은 식기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임금과 명나라 사신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신의 영접에 사용된 그릇은 칠기·닳그릇·사기그릇·나무그릇으로 제한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그릇을 올려 놓는 연회 음식상에는 붉은 보를 깔고 음식을 차리는 것이 예법이었다(『세종실록』 卷26 세종 6년 10월 壬子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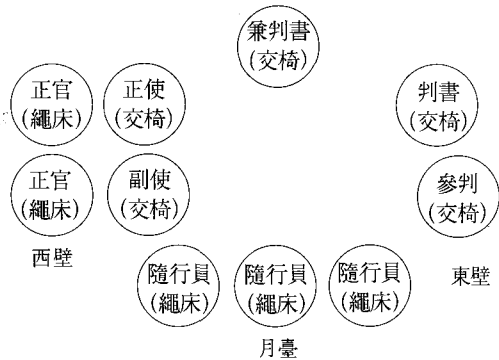
9. 객관(客館)과 연회에서의 좌석 배열

세종 원년(1419) 10월 왜인에 대한 접대를 재개 하기 위하여 예조와 의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한 이후(『세종실록』 卷5 세종 원년 10월 戊戌條), 성밖에다가 동평관(東平館)·서평관(西平館)·묵사(墨寺)의 세 곳에 마련하여 접대를 하였다. 이 접대의례는, 세종5년(1423) 12월 이후부터 예조의 “이번에 일본 국왕이 보내오는 사람들의 숙소를 세 곳에 따로 정해주면 물자를 공급하거나 연회 등을 예빈시에서 혼자 맡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동평관은 예빈시에, 서평관은 인수부에, 묵사는 인수부에 맡길 것입니다. 대궐에 와서 사례할 때와 접견할 때, 세 차례의 음식대접, 예조에서의 두차례의 위안하는 연회, 답례하는 관리가 왜인을 찾아볼 때, 한강에서의 작별 연회는 내자시·내섬시·예빈시에서 그 때의 사정에 따라 나누어 맡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의한 이후(『세종실록』 卷22 세종 5년 12월 丁卯條), 본격적으로 세곳에 나누어 분산하여 접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객관에서 연회는 예빈시·인수부에서 각각 맡고, 그 밖의



- ① 겸판서(兼判書) : 2자급이 높은 이가 판서를 했을 때 겸판서라하고, 1자급 이 높은 이를 행판서라함.
- ② 교의(交椅) : 의자.
- ③ 승상(繩床) : 노끈으로 엮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의자.
- ④ 월대(月臺) : 임금이 거쳐하는 궁전 앞의 섬돌.

〈그림 18〉 국왕의 사신을 위한 禮曹宴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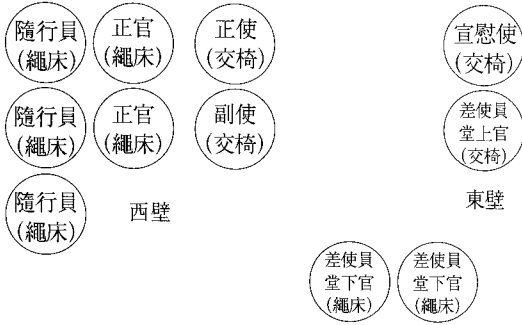


〈그림 19〉 여러 큰 제후의 사신을 위한 禮曹宴儀

연회는 내자시·내섬시·예빈시에서 나누어 맡아 연회를 주관하고 있다.

『해동제국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조연의(禮曹宴儀)는 공식적으로 베푸는 두 차례의 위안하는 연회에 해당될 것이다.

연회에서의 좌석 배열이 언제 성립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히기는 곤란하다. 다만 세종7년(1425)에 예조에서 왜국 사신이 임금에게 예를 행하는 절차를 마련한 사실에서(『세종실록』 卷28 세종 7년 4월 乙酉條), 이 때를 전후하여 성립되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된다.



〈그림 20〉 삼포(三浦)에서의 국왕의 사신을 위한 宴儀(宣慰使연회).



〈그림 21〉 국왕의 사신을 위한 관찰사의 路宴(여러 큰 제후의 사신에 대한 관찰사의 노연도 같음).

그림 18에서 그림 21에는 일본의 사신에 해당하는 정사·부사·정관이 서벽에 앉게끔 배열되고 있다. 조선조의 상좌(上座)의 위치와 향배(向背)는 가장 높은 사람이 북쪽에서 남향하는 것이고, 다음이 동쪽에서 서향, 그 다음이 서쪽에서 동향, 맨 아랫 좌석이 남쪽에서 북향하는 것이며, 식전(式殿)의 당상(堂上)을 오르고 내리는 것에서도 주인 되는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동(東)쪽의 것으로 조계(階階, 동편섬돌로 동쪽은 주인을 상징하고 있다)라 하여 고려 왕조 때부터 구별하고 있었다(李範稷, 71).

조선왕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견할 때에 왕은 서쪽에 명사신은 동쪽에 서고, 왕은 서문을 명사신은 동문을 이용한 것에 반하여(金b, 40), 일본 사신은 예조연·노연·삼포연에서 각각 서쪽에서 동향하고 앉게끔 배치하고 있다.

### V. 맺는말

금구(禁寇)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회유 정책에서 나온, 조선 전기의 교린 외교는, 일본과의 통상 외교로

발전하여 세종8년(1426)에는 내이포·부산포·염포인 삼포(三浦)를 열어 무역하게 된다. 왜인들이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물자 공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세종25년(1443)에는 계해약조(癸亥約條)를 맺었고, 이 계해약조를 바탕으로 한 한·일 무역은 중종5년(1510) 삼포왜란으로 삼포가 폐쇄될 때까지 삼포는 한·일 통교의 중심지였다.

조선 전기 삼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韓·日 교역은 일본의 막부(幕府)가 약체였기 때문에, 막부를 위시하여 일본의 여러 호족과도 교역하는 다원적 교역의 형태로 일본의 여러 호족이 조선의 국왕에게 물품을 헌상하면 조선측이 답례로 회사품(回賜品)을 보낸 소위 진상(進上)이라는 형태의 교역이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교역물자는 각종 약재류·식품류·물감 및 매염류·옷감류·기용(器用)류·목재·유황·은·구리·납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었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교역물자는 배·무명·불경·오미자·갯·인삼·쌀·콩 등 제한된 품목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유입되는 물자 중, 후추·약재류는 당시 동남아시아 원산의 것들로 동남아시아와의 후추와 약재 교역의 중개상을 일본이 하였고, 뉴기니아 원산인 사탕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하여 과자로서 일본에 들어온 것인데 조선으로 하나의 교역물품이 되어 유입되고 있었다. 이 밖에 일본의 토산물인 굴·국수가 교역물자의 하나가 되어 조선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조선조 초기부터 이루어진 활발한 교역물자의 유입과 유출은 물론 일본 사신의 내왕에 의하여 생겨난 결과로서, 계해약조에 의하여 조선에 사신으로서 내조(來朝)한 인원수를 산정한 결과 1년에 약 2000명에 이르고 있고, 이 2000명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산출된 숫자이며 실제로는 세종원년(1455)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본 각처로부터 온 왜인이 6000 여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들의 접대 예우는 직책에 따라 달리 했지만, 그들이 입국하면 본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은 전적으로 조선의 부담이었기 때문에, 왜인의 출입에 수반하여 접대비용도 엄청나 국고에 소장된 료미(料米)가 고갈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

일본 사신 접대에는 일상식·연회식으로 구분된다. 일상식은 삼포(三浦)에서의 일상식과 경성에서의 일상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반(早飯)·조석반(朝夕飯)·주점심(晝點心)이 일상식인데 1日 4번 공제된 일상식 중 가장 비중을 크게 둔 것이 조반(早飯)으로서 속공조반식(熟供早飯式)이 있어서 쌍방이 주찬을 내어 대접하는 의례를 하였다. 사신 일행의 요청에 의하여 재료로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반(早飯)만은 속공(熟供)하여 주고 그 밖의 것은 5일에 한번씩 재료로서 지

급되었다.

일상식을 위한 재료 지급 내용을 보면 주식류에서는 쌀·황두·메밀·밀가루, 부식류에서는 조기·건전복[全鮑]·청어·준치·생선·미역·새우젓, 조미료에서는 참기름·소금·장·초·겨자, 및 그 밖에 차(茶)와 청주·술·딸나무이고, 사신 중에 중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선류와 젓갈류를 빼고 참버섯·표고버섯·죽순·뽕海召를 지급하였다.

연회에는 삼포연·경중영전연(京中迎錢宴)·주간의술 대접·노연(路宴)·궐내연(闕內宴)·예조연(禮曹宴)·명일연(名日宴)이 있었으며, 간반(看盤)에 해당하는 찬탁(饌卓)·상화(床花)·권화(勸花)·술5잔·5미(味數)·대선(大膳)·잡화 및 음악으로 연회는 구성되었다. 일본 사신 영접에 차려진 연회상들은, 명나라 사신 영접에서 두목(頭目)들에게나 차렸던 수준의 것으로 그 대접은 만주 지역의 여진족과 같은 낮은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연회 때의 좌석 배열은 일본 사신인 정사·부사·정관이 서벽(西壁)에, 조선의 겸판서·판서·참판은 동벽(東壁)에 배열하여, 일본 사신 일행을 조선의 영접 관리 보다 낮은 위치에 앉게끔 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韓國漢字語辭典』, 단국

대학교출판부, 1995.

- 2) 『太祖實錄』
- 3) 『定宗實錄』
- 4) 『太宗實錄』
- 5) 『世宗實錄』
- 6) 『世祖實錄』
- 7) 『成宗實錄』
- 8) 『國朝五禮儀』
- 9) 부산직할시 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제1권, 1989.
- 10) 申叔舟, 『海東諸國記』, 1471.
- 11) 世界有甲植物事典編集委員, 鈴木晋一, 『世界有甲植物事典』, 平凡社, 1989.
- 12) 金尙寶a,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 광문각, 1997.
- 13) 金尙寶b, 『朝鮮王朝宮中儀軌飲食文化』, 修學社, 1995.
- 14) 金尙寶c, 『水原市史』, 水原市, 1997.
- 15) 李範稷, 『高麗史禮志 軍禮의 검토』
- 16)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 17)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 18) 『迎接都監儀軌』, 1609.
- 19) 『迎接都監儀軌』, 1643.
- 20)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
- 21) 『通文館志』
- 22) 『增正交隣志』